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 문 위 원 구현우

목 차

제1장 개요

I. 총 괄	1
I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
1. 일반회계	2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
III. 재무제표	18
1. 재정상태표	18
2. 재정운용표	20
3. 순자산변동표	21
IV. 성과보고서	22

제2장 검토의견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4
1. 조세심판원	24
(1)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26

(2)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의 확대 집행 부적정	30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정부위원 참석률 제고 필요	33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이행과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37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덩어리규제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44
5.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지자체와의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 노력 필요	48
6.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비비 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 소요액 계상 필요	55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62

1. 공통: 징계처분 관련 인사·보수 운영 기준의 합리화 필요	62
2.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무 준수 필요 ..	73
3. 공통: 정보화사업의 기본연구사업(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 타당성 검토	79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9
(1)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보완 필요	89
(2) 연구지원부서의 생성형 AI 구독 예산 편성기준 마련 필요	94
5. 산업연구원: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예산 편성 및 파견인력 운영 개선 필요	99
6. 에너지경제연구원: 노트북 등 휴대용 자산관리체계 개선 필요	106
7.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포함): 해외연수·학술파견제도 성과관리 강화 필요	110
8. 한국교육개발원: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117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KICE 학습포럼 운영 필요	124
10. 한국노동연구원	130
(1)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131
(2) 연구사업 간 예산 혼용 집행 개선 필요	136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 일간지 구독료를 개별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관행 개선 필요	141
12. 한국행정연구원: 챗봇 서비스 성과관리 강화 필요	146
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시연구과제 집행관리 강화 필요	149

제1장 개요

1. 총괄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재정규모(세출예산현액 순계 기준)는 2024회계연도 재정규모 6,623억 5,600만원 대비 104억 4,000만원 증가한 6,727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04억 2,200만원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3억 7,4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604억 2,200만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증가 92억원에 주로 기인함.
- 2025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123억 7,400만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증가 7억 4,300만원에 기인함.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A)	2025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일반회계(a)	650,725	660,422	9,697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b)	11,631	12,374	743	6.4
총 재정규모(c=a+b)	662,356	672,796	10,440	1.6

주: 예산현액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2억 7,900만원인데, 4억 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주요 수납내역은 관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회수 3억 7,000만원 및 출연·보조사업 이자수입, 집행잔액 반납금 1,700만원 등임.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증 감 (B-A)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	16	16	-	-	14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77	431	427	-	4	150
기타잡수입(69-691)	-	2	2	-	-	2
계	279	449	445	-	4	16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세출결산

1) 총 괄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6,591억 600만원, 전년도 이월액(6억 5,400만원)과 예비비(6억 6,3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04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인 6,438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9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경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출액의 9.2%인 594억 9,8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2.1%인 135억 1,400만원이 기본경비로, 88.7%인 5,707억 9,200만원이 사업비로 각각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예비비				
□ 합계	659,106	659,106	654	2,001 △2,001	-	663	660,422	643,805	710	15,907
○ 인건비	60,274	60,274	-	234 △234	-	-	60,274	59,498	-	776
○ 기본경비	14,235	14,235	42	317 △378	-	-	14,218	13,514	-	704
-기본경비 (대상)	4,835	4,835	-	84 △96	-	-	4,823	4,524	-	299
-기본경비 (비대상)	9,400	9,400	42	234 △282	-	-	9,395	8,990	-	405
○ 사업비	584,597	584,597	612	1,451 △1,392	-	663	585,932	570,792	710	14,42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인건비의 당초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02억 7,400만원이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이 중 594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본부 인건비 집행 과정 중, 국무조정실 내 퇴직자 다수 발생 등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 2억 3,4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집행하였음. 그 결과, 국무조정실 인건비는 예산액 384억 8,500만원 대비 100.3%인 38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는 예산액 95억 4,600만원 대비 96.5%인 92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조세심판원 인건비의 당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모두 122억 4,300만원으로 동일하며, 연초 상임심판관 공석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 5억 6,200만원을 제외하고 총 116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 인건비	60,274	60,274	-	234 △234	-	60,274	59,498	-	776
○ 본부 인건비	48,031	48,031	-	234 △234	-	48,031	47,817	-	214
- 국무조정실 인건비	38,485	38,485	-	234	-	38,719	38,608	-	111
-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	9,546	9,546	-	△234	-	9,312	9,209	-	103
○ 조세심판원 인건비	12,243	12,243	-	-	-	12,243	11,681	-	56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142억 3,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200만원 및 전용 등에 따른 순감 재원 6,100만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현액 142억 1,800만원 중 95.0%에 해당하는 135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본부 기본경비(총액)는 당초 예산액 41억 2,000만원에서, 신규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 설립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현액 41억 1,000만원 중 93.5%에 해당하는 3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는 당초 예산액 7억 1,500만원에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발생에 따른 전용감 재원 200만원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 7억 1,300만원 중 96.4%에 해당하는 6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본부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79억 6,000만원에서, 전년도 국외업무여비 이월액 2,000만원 및 신규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전용감 재원 5,000만원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 79억 3,000만원 중 95.0%에 해당하는 75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14억 4,000만원에서, 연구용역 완료일자 연기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2,200만원 등을 반영한 14억 6,500만원으로, 이 중 99.2%인 14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 기본경비	14,235	14,235	42	317 △378	-	14,218	13,514	-	704
○ 본부 기본경비(총액)	4,120	4,120	-	72 △82	-	4,110	3,837	-	273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715	-	12 △14	-	713	687	-	26
○ 본부 기본경비	7,960	7,960	20	193 △244	-	7,930	7,536	-	394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440	1,440	22	41 △38	-	1,465	1,454	-	1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주요 사업비

□ 2025년도 주요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5,845억 9,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1,200만원 및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비비 6억 6,3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한 예산현액 5,859억 3,200만원 중 97.4%인 5,707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7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미배정에 따른 불용 등에 의해 144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예비비				
□ 합계	584,597	584,597	612	1,451 △1,392	663	585,932	570,792	710	14,427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7031)	5,769	5,769	-	20 △20	-	5,769	5,620	-	14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97	197	-	-	-	197	117	-	80
국정운영 정보화	1,346	1,346	-	-	-	1,346	1,336	-	1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845	2,845	-	20 △20	-	2,845	2,813	-	32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1,242	1,242	-	-	-	1,242	1,223	-	19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139	139				139	131		8
○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7032)	2,007	2,007	5	4 △4	-	2,012	1,894	-	118
공공기관 갈등관리	350	350	-	-	-	350	332	-	18
대테러센터 운영	710	710	-	1 △1	-	710	682	-	28
인권보호관 지원	410	410	-	3 △3	-	415	381	-	34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537	537	-	-	-	537	499	-	38
○ 규제개혁(7033)	8,312	8,312	-	127 △127	-	8,312	6,955	649	708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989	1,989	-	67 △67	-	1,989	1,898	-	91
규제개혁 정보화	2,528	2,528	-	-	-	2,528	1,740	649	139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795	3,795	-	60 △60	-	3,795	3,317	-	478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24,514	24,514	607	281 △286	-	25,117	23,694	-	1,422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단 운영	96	96	-	-	-	96	93	-	3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5,396	5,396	-	5 △5	-	5,396	4,998	-	398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07	107	-	-	-	107	96	-	11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144	144	-	3 △3	-	144	134	-	10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3,460	3,460	-	-	-	3,460	3,431	-	29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예비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034	7,034	353	-	-	7,387	6,942	-	445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5,049	5,049	-	13 △13	-	5,049	4,723	-	326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442	442	-	12 △12	-	442	410	-	3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628	628	54	207 △207	-	682	518	-	164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33	33	-	-	-	33	32	-	1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1,958	1,958	200	1	-	2,159	2,158	-	1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67	167	-	40 △46	-	161	159	-	2
○ 행정지원(7036)	9,338	9,338	-	999 △935	663	10,065	9,247	62	756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1,153	1,153	-	-	-	1,153	1,123	-	30
내부 정보화(정보화)	2,472	2,472	-	-	-	2,472	2,469	-	3
공직복무 관리	954	954	-	-	-	954	895	-	59
국무총리 공관관리	400	400	-	-	-	400	392	-	8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400	1,400	-	-	-	1,400	1,157	-	243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303	303	-	6	-	309	306	-	3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7	707	-	8 △8	-	707	703	-	4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1,949	1,949	-	897 △897	-	1,949	1,674	-	275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	-	30 △30	663	663	475	62	126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	-	-	58	-	58	53	-	5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7037)	1,422	1,422	-	20 △20	-	1,422	1,343	-	79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70	570	-	-	-	570	550	-	20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과의 소통강화	852	852	-	20 △20	-	852	793	-	59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8810)	217	217	-	-	-	217	217	-	-
○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 (1500)	533,018	533,018	-	-	-	533,018	521,821	-	11,19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7031)은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57억 6,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7.7%인 5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사업(7032)은 공공기관 갈등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1,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4.1%인 1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규제개혁 사업(7033)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신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83억 1,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3.7%인 6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사업(7035)은 범부처 청년정책 추진 체계의 총괄·조정,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 등 범정부적 중장기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251억 1,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4.3%인 23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행정지원 사업(7036)은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 집행과 내부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지원 목적의 사업으로, 100억 6,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1.9%인 9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사업(7037)은 국정홍보 및 제정당·시민사회,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4억 2,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4.4%인 1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사업(8810)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 부담금(교원 퇴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부거래 전출금 2억 1,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사업(1500)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 및 국가정책으로의 긍정적 환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5,330억 1,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7.9%인 5,218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음.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 2025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5,330억 1,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50억 7,500만원을 합한 5,480억 9,300만원이며 이 중 5,368억 9,700만원이 집행되고 96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¹⁾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전년도 이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연 받은 출연금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기준에 의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1500)의 일반회계 결산기준에 의한 전년도 이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과는 회계처리 주체와 인식기준 측면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결산수치임.

〈2025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유보액)	차년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예비비	전용액	이용및 이체				
계	533,018	533,018	15,075	-	-	-	548,093	536,897	11,196	9,604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2,122	22,122	959	-	-	-	23,081	22,553	528	241
23개 연구기관	510,896	510,896	14,116	-	-	-	525,012	514,344	10,668	9,36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로 연구과제 수행상 다음연도에 걸쳐 집행되거나 차년도로 과제수행이 순연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111억 9,600만원은 2025년도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을 고려하여 연말 미교부 처리함. 이월액 96억 400만원은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26년도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었음.

□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합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의 2025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결산액은 각각 예산액 1조 1,188억 4,300만원보다 783억 3,200만원이 증가한 1조 1,97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결산액 중 정부출연금은 5,218억 2,1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5,950억 2,2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이 전체 수입액의 43.6%를 차지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출연연구기관 결산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25 예산액(A)	2025 결산액(B)	증감액 (B-A)	비 고
수 입	1. 정부출연금	533,018	521,821	△11,196	
	○ 정부출연금 편성	536,073	524,876	△11,196	
	- 인건비	334,278	323,148	△11,130	
	- 기관고유사업비	54,455	54,455	-	
	- 일반사업비	91,251	91,185	△66	
	- 경상운영비	55,461	55,461	-	
	- 시설비	628	628	-	
	○ 정부출연금 대체(△)	△3,055	△3,055	-	
	2. 자체수입	505,316	595,022	89,706	
	- 수탁용역수입	413,944	483,096	69,152	
	- 정부대행사업 수입	77,176	90,991	13,815	
	- 이자수입	3,748	4,568	821	
	- 기타수입	7,393	13,312	5,918	
	-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정부출연금 대체	3,055	3,055	-	
	3. 전기이월금	54,268	54,268	-	
	4. 융자금 회수	-	-	-	
	5. 차입금	3,016	2,406	△610	
	6. 연구개발적립금	23,226	23,658	432	
	계	1,118,843	1,197,175	78,332	
지 출	1. 인건비	458,938	429,119	29,819	
	2. 연구사업비	545,262	521,156	24,106	
	○ 기관고유사업비	67,708	62,892	4,816	
	○ 일반사업비	99,744	93,426	6,318	
	○ 수탁용역사업비	299,582	289,213	10,370	
	○ 정부대행사업비	78,227	75,625	2,602	
	○ 청년인턴쉽운영	-	-	-	
	3. 경상운영비	72,142	70,687	1,455	
	4. 시설비	1,633	1,248	386	
	5. 기타(차입금 등)	3,027	2,413	614	
	6. 연구개발적립금	37,841	26,702	11,139	
	7. 결산잉여금처분 등	-	145,850	△145,850	
	계	1,118,843	1,197,175	△78,33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이월내역

-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총 7억 1,0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사업완료일 미도래에 기인함.

〈2025회계연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규제개혁 정보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인한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 일정 지연으로, 사업완료일 회계연도 내 미도래에 따라 차년도 이월	649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해외사례 관련 연구용역 및 인식도 조사관련 조사 용역 종료시점('26.1월) 고려, 선금 50% 제외 나머지 금액 차년도 이월	43
		18
총 계		71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 이·전용내역

- ☐ 2025회계연도 이용은 없으며, 전용액은 전년도 7억 300만원 대비 48.9% 감소한 3억 5,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주요 이·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용 감액			전용 증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1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1	창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자산취득비	1	조달수수료 확보
2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정책연구비	60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공사비	60	원상복구 공사비 확보
3	인권보호관 지원	기타직보수	3	인권보호관 지원	고용부담금	3	일시적으로 증가한 퇴직금 수요 대응
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일용임금	28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	28	일시적으로 증가한 퇴직금 수요 대응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용 감액			전용 증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직책수행경비	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3	공통경비 부족분 확보
		직책수행경비	4		국외업무여비	4	
6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20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20	공통경비 부족분 확보
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5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일반연구비	50	신규 연구용역 추진
8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40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국내여비	40	공통경비 부족분 확보
9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일용임금	32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	32	일시적으로 증가한 퇴직금 수요 대응
10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	3	부동산감독 추진단 운영	특근매식비	3	부동산 감독 추진단 신설 관련 운영경비 전용
		기타운영비	1		기타운영비	1	
		직책수행경비	5		직책수행경비	5	
11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0		일반수용비	10	
		공공요금 및 제세	2		공공요금 및 제세	2	
		임차료	16		임차료	16	
		국내여비	5		국내여비	5	
		사업추진비	1		사업추진비	1	
		관서업무 추진비	2		관서업무 추진비	2	
		공사비	13		공사비	13	
12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일반용역비	6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관리용역비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대응
13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37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국내여비	37	공통경비 부족분 확보
1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1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17	공통경비 부족분 확보
합계			359			35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 불용내역

-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6,604억 2,200만원 대비 2.4%인 159억 700만원이며, 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11억 9,600만원 미배정에 따른 불용에 기인함.

〈2025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합 계	15,907
○ 인건비	776
○ 기본경비	705
○ 사업비	14,888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148
- 사회통합정책 및 안전관리 추진	117
- 규제개혁	709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1,420
- 행정지원	756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79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1,19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예비비 지출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6억 6,3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4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6,2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추진을 위한 조직인 “검찰개혁추진단” 출범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663	475	62	12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 및 수납액은 없었음.

나.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예산현액 123억 7,400만원이며, 이 중 96.3%인 119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이체				
□ 합계	12,374	12,374	-	-	-	12,374	11,910	-	464
○ 에너지경제연구원 (R&D) 출연금	12,374	12,374	-	-	-	12,374	11,910	-	46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이월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전용내역

☐ 해당 사항 없음.

마. 불용내역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23억 7,400만원 대비 3.7%인 4억 6,400만원이며, 전액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미배정에 따른 불용에 기인함.

〈2025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합 계	464
- 에너지경제연구원(R&D)	46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II.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²⁾

□ 2025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4,187억 2,200만원이고, 부채는 15억 8,800만원이며, 순자산은 4,171억 3,400만원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금융자산	1,058	1,084	△26	△2.4 %
	유·무형자산	416,949	416,075	874	0.2 %
	기타자산	716	1,182	△466	△39.4 %
	자산계	418,722	418,341	381	0.1 %
부 채	차입부채	52	62	△10)	△16.1 %
	충당부채	1,536	1,841	△305)	△16.6 %
	기타부채	-	-	-	-
	부채계	1,588	1,902	△314	△16.5 %
순자산	기본순자산	127,637	127,637	-	-
	적립금 및 잉여금	2,084	1,143	941	82.3 %
	순자산조정	287,413	287,658	△245	△0.1 %
	순자산계	417,134	416,438	696	0.2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현재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5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3억 8,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당기 구입에 의한 무형자산 증가에 기인함.
- 2025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채는 전년도 말 대비 3억 1,4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에 따른 충당부채 감소에 기인함.
- 2025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6억 9,600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조달 및 이전의 영향에 기인함.

2. 재정운영표³⁾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 결과는 6,639억 9,400만원 손실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6,395억 4,700만원 손실 대비 손실 규모가 244억 4,700만원 증가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533,938	516,276	17,662	3.4 %
II. 관리운영비	130,102	123,353	6,749	5.5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46	82	△36	△43.9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63,994	639,547	24,447	3.8 %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63,994	639,547	24,447	3.8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프로그램 순원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등 프로그램 원가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7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⁴⁾는 인건비 등의 증가로 67억 4,900만원 증가하였음.

□ 비배분수익⁵⁾은 전년도 대비 3,6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는 6,639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억 4,700만원 증가함.

3)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냄.

4) 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되지 않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관련 비용

5) 재화 및 용역 등 반대급부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중 프로그램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수익

3. 순자산변동표

- 2025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말순자산은 4,17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순자산 4,164억 3,800만원 대비 6억 9,600만원 증가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416,438	412,120	4,318	1.0 %
II. 재정운영결과	663,994	639,547	24,447	3.8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64,935	644,171	20,764	3.2%
IV. 조정항목	△245	△305	60	19.7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17,134	416,438	696	0.2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기초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1,8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액이 전년도 대비 207억 6,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비(세출)의 증가에 따른 국고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함.
- 조정항목의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6,000만원으로, 자산재평가이익의 증가에 기인함.

IV. 성과보고서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년도 정책비전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로 설정하여, 1대 전략목표를 설정·추진하였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관리체계도〉

임 무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 성과를 제고한다
비 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성과목표	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5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달성도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는 총 2개 지표 중 2개를 달성(100.0%)하였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 달성도 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			
	합 계	성과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2	-	2	-
합 계	2	-	2	-

주: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이상~130%미만, 미달성: 100% 미만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5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프로그램목표 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2025년도 결산실적은 예산 대비 92.4%인 412억원임.

〈프로그램목표 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목표관리체계		회계구분	단위사업명	2025 예산	2025 결산	집행률
총 계				446	412	92.4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46	412	92.4
프로그램목표 I - 1:국무총리 보좌기관의 국무총리 보좌역량 제고				446	412	92.4
I -1- 일반재정(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일반회계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58	56	97.4
I -1- 일반재정(4)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일반회계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20	19	94.2
I -1- 일반재정(3)	규제개혁	일반회계	규제개혁	83	70	83.7
I -1- 일반재정(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일반회계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251	237	94.3
I -1- 일반재정(5)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일반회계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14	13	94.4
I -1- 일반재정(6)	행정지원	일반회계	행정지원	19	17	85.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2장 검토의견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조세심판원⁶⁾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구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⁷⁾ 국세 및 지방세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2025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관련 세부사업은 5개로, 총 예산현액 148억 9,000만원 중 142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억 300만원(4.0%)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2,243	12,243	-	-	12,243	11,681	-	562	12,46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715	-	12 △14	713	687	-	26	777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440	1,440	22	41 △38	1,465	1,454	-	11	1,560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67	167	-	40 △46	161	159	-	2	117
조세심판원 정보화(정보화)	303	303	-	5	308	306	-	2	303
합 계	14,868	14,868	22	98 △98	14,890	14,287	-	603	15,222

(자료: 조세심판원)

6)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1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2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3-325),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

7)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하 생략)

□ 조세심판원은 ① 납세자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② 이를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되, ③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함.⁸⁾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

〈2025년도 회의별 심판청구 처리현황〉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조세심판관회의	주심단독	계
34건	7,137건	606건	7,777건

(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 2026.4. p.108)

8)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②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토의견

(1) 법정 처리기한 준수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¹⁰⁾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등은 과세처분 불복에 대해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즉,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 3가지 행정심판제도(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②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③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해야 하는데, 심판·심사청구 후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¹¹⁾

9)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0)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되어, 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②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¹²⁾

□ 그런데, 조세심판 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5년도 평균 처리일수가 225일로 나타나,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한 사건의 비율이 2023년도 50%, 2024년도 35.4%, 2025년도 12.8%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또한, 총 처리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평균 사건 처리일수는 오히려 2023년도 172일, 2024년도 185일, 2025년도 225일로 매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조세심판 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90일 이내		91~180일		180일 초과		총 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2	656	5.6	5,156	44.6	5,753	49.7	11,565	234
2023	8,244	50.0	2,857	17.3	5,384	32.7	16,485	172
2024	3,596	35.4	2,818	27.7	3,764	37.0	10,178	185
2025	1,024	12.8	3,027	37.9	3,945	49.3	7,996	225
2026.6. 기준	114	3.7	1,288	42.3	1,644	54.0	3,046	246

(자료: 조세심판원)

12)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특히, 지방세 분야의 사건 처리기간을 따로 살펴보면, 2025년도 평균 사건 처리일수가 255일에 이르고 있어, 내국세(2025년 평균 처리일수: 204일) 등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방세 분야 심판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연도	90일 이내		91~180일		180일 초과		총 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2	153	6.9	332	14.8	1,752	78.3	2,237	334
2023	2,390	43.4	1,149	20.9	1,960	35.6	5,499	195
2024	1,557	41.7	458	12.3	1,722	46.1	3,737	201
2025	458	14.3	906	28.1	1,855	57.6	3,219	255

(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 2026.4. p.77)

다른 분야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는데, 감사원 심사청구¹³⁾의 경우에는 접수사건 비중이 높지 않아, 전심절차로서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13) <2024년도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현황>

	접 수		
	계	전년도 이월	본년도 접수
계	2,009	1,180	829
내국세	1,085	875	210
관세	28	3	25
지방세	182	124	58
기타	714	178	536

(자료: 「2024 감사연보」, 감사원, 2025.5. p.501)

□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조세심판의 경우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사건처리 지연은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사건 법정처리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¹⁴⁾: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의 확대 집행 부적정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6,1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1.8%)은 불용하였음.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67	167	40 △46	161	159	-	2	117

(자료: 조세심판원)

- 동 사업은 2025년도 신설 사업으로서, ‘조세심판제도 홍보’와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정부는 ‘조세심판제도 홍보’에 9,200만원,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에 1억원을 배정하여 총 1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 중 납세자 권리보호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2,500만원 감액하였음.¹⁵⁾

14) 세부사업: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15)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중>

세부사업명	2025(안)	수정안	증감액	수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192	167	△25	○ 조세심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비는 납세자 권 리보호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백서제작비 2,000만 원, 동영상 제작비 500만원 등 2,500만원 감액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예산안 감액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예산안	국회 심사결과	2025확정예산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92	△25	167
- 조세심판제도 홍보사업	92	-	92
-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100	△25	75

(자료: 조세심판원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¹⁶⁾

□ 그런데, 관련 경비 집행 현황을 보면,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에서 7,343만원, ‘조세심판원 기본 경비(7011-252)’ 사업에서 1,248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동 기념사업에 총 8,591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 예산을 소진한 후, 별개의 세부사업인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사업에서 1,248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임.

16) <2025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법정 의무지출사업과 예산총칙에 따른 사업은 제외)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한다.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 용	집행액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일반수용비	50주년 기념품 제작	5,247
	일반용역비	50주년 기념사업(백서 발간, 동영상 제작, 심포지엄 개최, 기념 행사)	68,182
소 계			73,42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252)	일반수용비	50주년 기념행사 및 자문회의 관련 물품 구입	702
	임차료	행사장 LED 전광판 임차	4,730
	국내여비	행사장 이동 운임	1,760
	업무추진비	50주년 기념행사 및 자문회의 관련	5,291
소 계			12,483
합 계			85,912

(자료: 조세심판원 제공자료 재구성)

□ 이는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1억원 → 7,500만원)한 국회의 예산 심사 취지에 반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도록 요구한 부대의견에도 반하는 것임.¹⁷⁾

□ 조세심판원은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확대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7)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50주년 기념행사에 내부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사전 점검 중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사업 예산을 활용하였다고 설명함.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¹⁸⁾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억 4,500만원 중 28억 1,300만원(98.9%) 집행되고,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845	-	20 △20	2,845	2,813		32	3,194

(자료: 국무조정실)

18) 세부사업: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

2) 검토의견: 정부위원 참석률 제고 필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

○ 위원장은 민간 위촉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게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있으며,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¹⁹⁾.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 평가결과 확인·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10회(서면 1회), 2024년 9회(서면 2회), 2023년 9회 등 매년 약 10회 내외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음.

□ 각 회의별 정부위원(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²⁰⁾,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의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의

1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0) 2025. 9. 정부조직 개편 이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경우 정부위원 참석 현황이 회의당 평균 1인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의 경우 9번의 회의에서 민간위원은 총 11명 중 평균 8.6명(78.8%)이 참석하였고, 정부위원은 총 4명 중 평균 2.3명(58.3%)이 참석하였음.
-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각각 9번, 10번의 회의 중 민간위원은 평균 9.3명(84.8%), 9.1명(82.7%)이 참석한 반면, 정부위원은 평균 1명(25%)이 참석하는 등 정부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23~2025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

연도	회의		위원 참석현황		회의		위원 참석현황	
	일시	방식	정부 (4명)	민간 (11명)	일시	방식	정부 (4명)	민간 (11명)
2023년	2023.2.3	대면	1	8	2023.6.16	대면	2	9
	2023.2.24	대면	2	9	2023.9.14	대면	3	10
	2023.3.24	대면	3	10	2023.10.20	대면	2	9
	2023.4.27	대면	2	8	2023.11.17	대면	3	8
	2023.5.19	대면	3	7	연평균		2.33 (58.3%)	8.67 (78.8%)
2024년	2024.2.2	대면	1	8	2024.6.28	대면	1	10
	2024.3.15	대면	2	9	2024.10.10	대면	1	9
	2024.3.29	대면	2	10	2024.10.23~10.29	서면	0	11
	2024.4.22 ~ 4.25	서면	0	11	2024.11.22	대면	2	8
	2024.5.31	대면	0	8	연평균		1.00 (25.0%)	9.33 (84.8%)
2025년	2025.1.17	대면	1	11	2025.8.29	대면	1	9
	2025.2.28	대면	1	9	2025.9.26	대면	1	10
	2025.3.28	대면	1	7	2025.10.17	대면	1	8
	2025.4.18	대면	2	9	2025.11.14	대면	1	8
	2025.5.30	대면	1	9	연평균		1.00 (25.0%)	9.10 (82.7%)
	2025.7.22 ~ 7.25	서면	0	11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정부위원의 참석 현황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정부업무를 평가하는 위원회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고,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피평가기관인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척 대상이 되는 정부업무평가 결과 심의·의결 외에, 평가 관련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업무평가 심의·의결 등이 안건인 경우에도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아울러 2023년의 경우 정부위원이 회의별로 2명 또는 3명이 출석하였으나, 2024년 이후에는 사실상 국무조정실장 외의 정부위원은 참석하지 않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범정부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운영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총괄 기구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낮은 것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 정부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²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 8,900만원 중 18억 9,800만원(95.4%)이 집행되고, 9,100만원(4.6%)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989	1,989	67 △67	1,989	1,898	-	91	2,830

(자료: 국무조정실)

21)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 검토의견: 연구용역 이행과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연구용역비 예산액은 3억원인데, 메가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전용(증)하여,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총 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연구용역비(260)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비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일반연구비 (260-01)	250	250	50	300	283	-	17	417
정책연구비 (260-02)	50	50	-	50	47	-	3	50
합 계	300	300	50	350	330		20	467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을 위해 총 10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연도 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납품받아, 다음연도 이월 없이 당초 계획대로 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그런데, 각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대조해 보면, 하반기에 발주한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액	집행액	과업지시 이행 여부
경제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연구	1.20.-3.20. (수의)	20	20	○
행정.사회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연구	1.16.-3.20. (수의)	20	20	○
지방규제혁신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4.30.-8.31. (수의)	20	20	○
공공기관 규정 등 유사행정규제 관리방안 연구	8.19-11.18. (제한경쟁)	27	27	○
인공지능 산업 진입규제 혁신 방안 연구	4.15-10.31. (제한경쟁)	90	90	○
바이오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과제 고도화 연구	8.14.-12.19. (수의)	19	19	○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9.24.-12.20. (수의)	20	20	○
2025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10.24.-12.31. (제한경쟁)	45	45	○
일본 규제특례 제도 연구	11.20.-12.19. (수의)	20	20	<미이행 내역> -일본규제특례 성과분석 (경제적 효과 및 편익 분석, 업역간 갈등 완화 등 사회적 편익 분석, 신산업 창출효과 대표사례) -규제특례제도 도입전략 (한국형제도 경쟁력 확보 방안, 인프라 조성방식 유형 도출)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	11.17.-12.31. (제한경쟁)	49	49	<미이행 내역>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특별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정책·이론적으로만 서술)
합 계		330	330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과업지시 이행 여부’ 추가)

□ “일본 규제특례 제도 연구”의 경우 과업지시서와 달리,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본규제특례 성과분석(경제적 효과 및 편익 분석 등) 및 규제특례제도 도입전략(인프라 조성방식 유형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일본 규제특례 제도 소개에 중점을 두어 보고서가 작성되었음. 일반적 제도 소개는 관련 법률 번역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본 규제특례의 성과 분석과 한국형 규제특례 도입전략이 이 연구의 핵심 사항임에도 해당 사항은 누락된 것임.

〈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 및 이행 여부〉

연구용역명 (수행자)	과업지시 내용	이행 여부
일본 규제특례 제도 연구 (○○파트너스) 사업일수: 30일	① 일본 규제특례 제도 운영체계 분석 - 일본 규제특례 제도의 법령체계, 구성요소, 운영 절차 및 개별 사례 분석 - 일본 규제특례 제도 운영 주체, 참여자별 역할, 규제환경 등 분석	○
	② 일본 규제특례 제도 성과 분석 - 일본 규제특례 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신산업 창출 효과 분석: 편익 분석 및 신산업 분야 등 대표 사례 분석. 특히, 성공사례에 대한 성과 요인 등 분석 - 일본 규제특례 제도의 업역간 갈등 완화 등 사회적 편익 분석: 직역·업역 간 갈등 해소·완화 등 사례 분석	×
	③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 도출 - 한국형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방법론, 도입 기대효과 및 한계 등 전략적 방법 및 구현 요소 제시: 인프라의 규모 및 활용 방식에 따른 조성 방식 유형 도출 등, 한국형 규제특례 제도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등	×
	-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운영 합리화 방안 등 제시	○

이처럼 과업지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동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이 총 30일(2025년 11월 20일 ~ 12월 19일)에 불과한데다, 해당 용역 수행업체가 경영컨설팅 전문업체로서 규제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나 편익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정책적·이론적으로만 서술하고 과업지시의 최종 목적인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동 연구용역 역시 짧은 사업 수행기간(계약기간: 2025년 11월 17일~12월 31일, 총 45일)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 및 이행 여부〉

연구용역명 (수행자)	과업지시 내용	이행 여부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 (○○산학협력) 사업일수: 45일	① 우리나라 특구 현황 및 실태 분석 - 현재 특정 지역단위로 다수의 특구 존재하나 실제 실효성은 미흡 그룹에도 새로운 특구가 지속적으로 신설되어 누더기 운영 우려 - 새정부 출범에 따른 新특구제도 신설시 특례효과 향상을 위해 기존 특구의 문제점을 분석·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적립	○
	② 일본 국가전략특구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내용(안) > ① 일본 특구제도 현황 및 국가전략특구 도입배경 ②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운영 현황과 성과사례 분석 ③ 일본 국가전략특구법의 주요 내용과 작동 체계 ④ 일본 국가전략특구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③ 메가특구 구체화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 우리나라 특구 및 일본 국가전략특구 연구·분석 내용을 토대로 메가특구의 도입·운영방안 마련	○
	- 특별법 제정안 구성	×

□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두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종 검사하고, 2025년 12월 23일에 각각 완수금을 지급하였음.

〈연구용역의 계약기간, 검사일 및 완수금지급일〉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수행자	계약기간	검사일	완수금지급일	집행액
일본 규제특례제도 연구	○○파트너스	2025.11.20.- <u>12.19.</u> (30일)	2025.12.19.	2025.12.23.	20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	○○산학협력	2025.11.17.- <u>12.31.</u> (45일)	2025.12.18.	2025.12.23.	49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일본 규제특례제도 연구’의 경우 총 사업기간이 30일인데, 그 사업종료 당일(2025. 12. 19.)에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음.

□ 또한,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의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이 45일(최종기한: 12월 31일)임에도 사업 시작일(11월 17일)부터 1달 경과 시점인 12월 18일에 이미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음.

이후, 2026년 2월 국무조정실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및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2025년도 연구용역 수행업체(○○산학협력)와 다시 계약하였는데, 그 과업지시서²²⁾에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다시 포함됨.

22) <과업지시서 내용 中>

“메가특구 내 광범위한 규제특례 내용, 적용 방안, 운영방식 등의 근거 법령(가칭메가특구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 마련”

〈2026년도 ‘메가특구 규제특례 적용·운영 방안 연구’ 계약 현황〉

연구용역 목적	금액	수행자	계약 기간	계약 방법
메가특구 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과 내용을 연구하여 (가칭)메가특구특별법 및 시행령 마련	8천만원	○○ 산학협력	2026. 3.17.-8.31.	제한 경쟁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검사할 때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음 연도인 2026년도 연구용역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과업지시 사항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재차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낮은 계약을 연도 말에 무리하게 체결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국무조정실은 연도 말에 무리한 일정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해당 결과보고서를 곧바로 검수해 완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²³⁾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전직공무원, 연구기관, 민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여 덩어리규제²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7억 9,500만원 중 33억 1,700만원(87.4%)이 집행되고, 4억 7,800만원(12.6%)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795	3,795	60 △60	3,795	3,317	-	478	-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덩어리규제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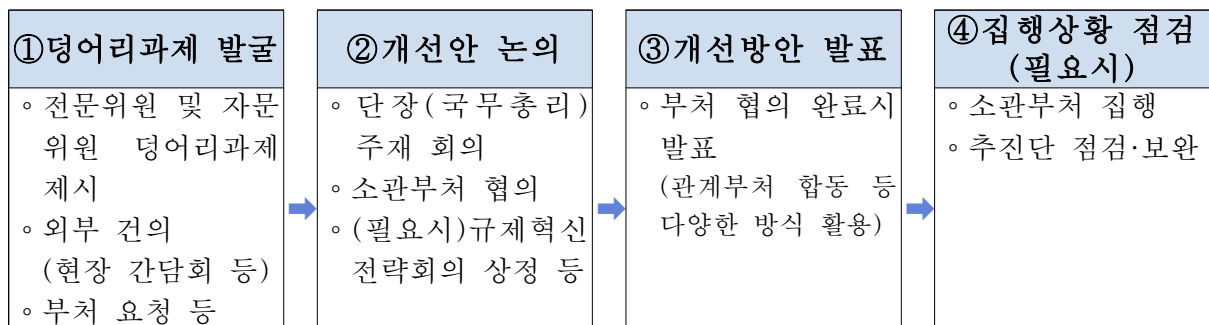
- 국무조정실은 2022년 8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하였음.

23) 세부사업: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24)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

-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한시조직(최초 3년 + 연장 2년)으로, 경제·사회분과 등 2개 분과별 전문위원과 지원국 등 총 13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는데,²⁵⁾ 2025년 7월 말 기한 만료로 해체되었음.
- 규제혁신추진단의 업무는 ①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덩어리과제 제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덩어리과제 발굴, ② 추진단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한 개선안 논의, ③ 개선방안 발표, ④ 필요 시 집행상황 점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규제혁신추진단 업무절차〉



(자료: 국무조정실)

25)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2.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3.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4.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 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
 - 나. 규제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국무총리가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된 사람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다.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
- 라. 그 밖에 추진단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규제혁신추진단은 그 활동기간(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동안 총 41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별 세부 개선과제 총 434개를 선정해 발표하였는데,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무조정실에 대해 장기 미이행 덩어리규제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규제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²⁶⁾

□ 그런데, 2026년 6월 기준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을 2025년과 비교해 보면, 총 이행률은 2025년 45.7%에서 2026년 6월 69.4%로 23.7%p 상승하였으나, 2022년도 발굴 과제의 이행률은 64.7%에서 전혀 변동이 없고, 2023년도 발굴 과제도 8.1%p 상승에 그치고 있으므로, 두 연도 과제의 이행이 정체된 원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해당 부처에 대한 이행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26) <시정요구사항>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지적사항	○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이후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 기준 400개 세부 개선과제 중 이행완료된 과제는 183개(45.7%)에 불과하였음
	시정 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장기 미이행 덩어리규제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규제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

(단위: 건)

연도	발굴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2026.6.기준)			2025년 이행률	2026년 6월기준 이행률
		합계	이행 완료	미이행		
2022	2	34	22	12	64.7%	64.7%
2023	17	98	74	24	67.4%	75.5%
2024	13	267	180	87	35.6%	67.4%
2025	9	35	25	10	-	71.4%
합계	41	434	301	133	45.7%	69.4%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규제혁신추진단은 활동기간(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동안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 등에 총 16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덩어리규제 개선과제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규제 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 규모에 상응하는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2~2025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집행액〉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합계
2,861	4,960	4,925	3,317	16,063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규제개혁은 개선방안 발표 자체보다 실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에도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당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²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은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을 청년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청년층의 정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5,800만원 중 21억 5,690만원(99.9%)이 집행되고, 11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정책통합 플랫폼 구축	100	200	1	2,158	2,157	-	1	2,558

(자료: 국무조정실)

27) 세부사업: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2) 검토의견: 지자체와의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 노력 필요

□ 국무조정실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온라인 청년센터’를 2022년부터 이관하여 ‘온통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해왔으며, 2024회계연도에서는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실시간·맞춤형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할 수 있고, 청년 개인에게 맞춤형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개요〉

구분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		(신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정책 정보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책정보 중복·누락 발생, 데이터 현행화에 장기간 소요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중복·누락 없이 실시간 정책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서비스 제공	개인의 수요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정책 추천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담	상담원을 통한 분야별·심층 상담을 제공하나, 이력관리 부재		청년의 분야별 상담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피상담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인프라	워크넷 서버 공동 활용, 기능 추가 및 개선에 한계		별도 클라우드 구축하여 기능 신설 및 개선을 위한 확장성 확보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²⁸⁾’를 수립하면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2024년과 2025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4년에는 34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1차로 구축 완료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예산안에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2차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1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14억 8,800만원이 삭감²⁹⁾된 바 있음.

○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1차 구축사업의 운용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 제2차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함께 채택하였음.

○ 그 결과 2025년에 편성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2차 구축 예산 중 1억원을 제외한 14억 8,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은 1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온통청년 플랫폼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청년정책 플랫폼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음.

28) ISP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IS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9)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2차 구축예산 중 삭감되지 않은 1억원을 통해 온통청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간 연계사업을 진행하였음.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용역명	주요 내용	계약기간	집행액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 구축	· 청년정책 정보 연계 표준안 구현 및 기능 개발 등	2025. 6. ~ 2025. 12.	100

(자료: 국무조정실)

□ 동 용역사업을 수행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온통청년 플랫폼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간에 자동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2026. 7.말 기준으로 보면,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만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부산·인천·충남·전북의 경우 2025년에, 서울·전남·제주의 경우 2026년에 각각 연계 서비스를 완료하여 총 7개³⁰⁾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완료되었음.

○ 다만, 대전·대구·세종·울산·경기·강원·경남·경북·충북의 경우 위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체 청년정책 플랫폼과 온통청년 플랫폼 간의 자동 정보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았음.

30) 2026년 7월 기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현재 기준 연계가 완료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7개임.

〈온통청년 및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플랫폼 연계 현황〉

지역	시스템명 (사이트명)		연계 여부	연계 시점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	‘26. 4월 연계완료
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통합플랫폼		○	‘26년 7월 통합신설
	통합	광주청년통합플랫폼	○	‘25년 연계완료
		전라남도 청년센터	○	‘26년 4월 연계완료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	‘25년 연계완료
인천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	‘25년 연계완료
충남	충남청년포털		○	‘25년 연계완료
전북	전북청년허브센터		○	‘25년 연계완료
제주	제주청년플랫폼 (청년이어드림)		○	‘26년 3월 연계완료
대전	대전청년포털		×	-
대구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	-
세종	세종청년센터		×	-
울산	울산청년정책플랫폼 (U-PAGE)		×	-
경기	경기청년포털		×	-
강원	강원 청년포털		×	-
경남	경상남도청년정보플랫폼		×	-
경북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	-
충북	충청북도 청년포털		×	-

(자료: 국무조정실)

□ 이와 같이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양 청년정책 플랫폼 간의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연계가 완료된 7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1차 구축 당시 잔여 장비를 활용해 연계를 완료하였다는 입장임.
-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청년정책 플랫폼 자동 정보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온통청년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온통청년 플랫폼에 청년정책을 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
- 그 결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중 일부가 온통청년에 등록되지 않거나 지연되어 등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온통청년을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반면, 연계 서비스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자체 플랫폼에 등록하면 위 연계 서비스에 따라 온통청년에서도 바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국무조정실이 온통청년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 것은 각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온통청년에서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 탐색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연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온통청년 플랫폼을 구축할 당시 청년정책 탐색비용이 연간 약 87.4억원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음.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편익 산출 근거〉

※ 청년정책 탐색비용 감소로 인한 편익(연 87.4억원) 산출 근거

- 편익(약 87.4억/연) = 최저임금(9,160원) × 절감(95.4만시간=접속자수(286만명)× 단축시간(시간당 20분))
- 접속자수(286만명/연) : 청년인원 수(2021년 서울시 청년밀집 지역 기준-통계청) /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 단축시간(20분) : 유사사례(복지부 공공보건포털 구축 후 조회업무 단축시간 20분) 참조

(자료: 국무조정실)

6. 검찰개혁추진단 운영³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4억 7,500만원(71.6%)이 집행되고, 6,200만원(9.3%)이 이월되었으며, 1억 2,600만원(19.0%)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	30 △30	663	663	475	62	126	1,734

(자료: 국무조정실)

□ 2025년 10월 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국무조정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었음.³²⁾

31) 세부사업: 검찰개혁추진단 운영(7036-316)

32)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기소 기능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 등의 제정·개정 지원

○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³³⁾

○ 검찰개혁추진단에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협의회³⁴⁾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³⁵⁾를 두고 있으며, 실무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3.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이관·채용 업무 지원
4.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와 관련 시설의 확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5.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7. 그 밖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33)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진단의 업무에 관하여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제9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4)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검찰개혁추진협의회 설치 등)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검찰개혁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및 법제처 차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는 위원장이 검찰개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또는 차장

35)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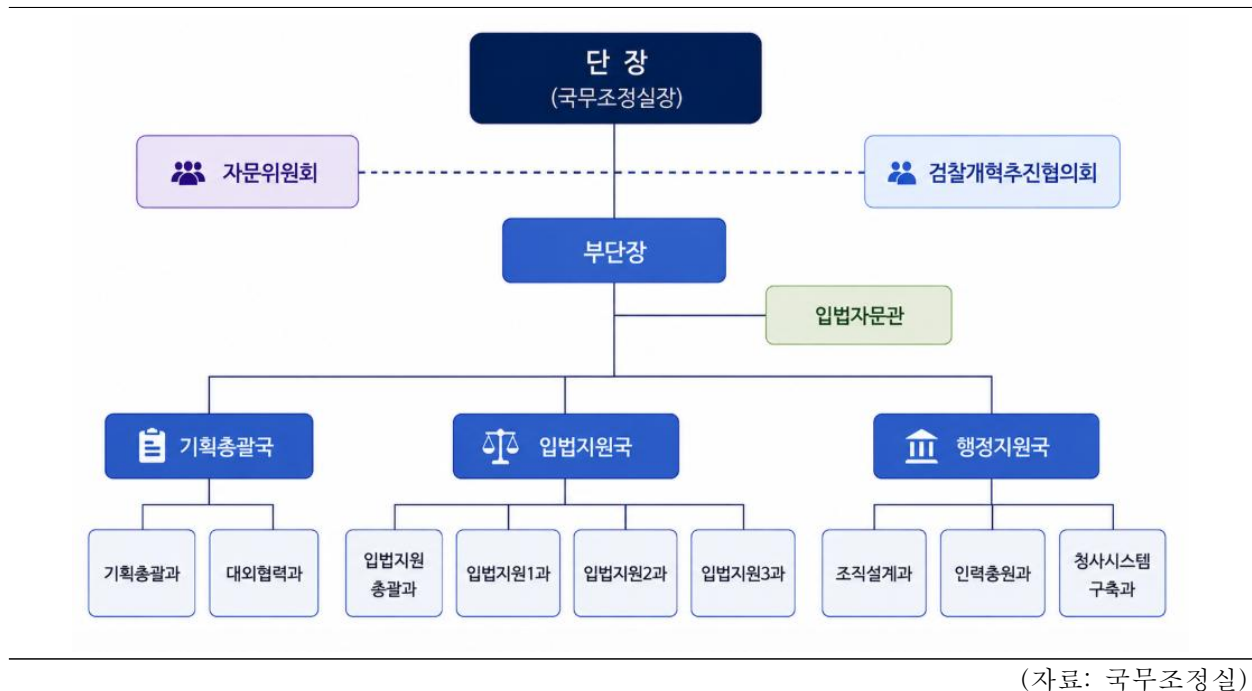
제5조(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추진단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조직으로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및 행정지원국 등을 두고 있음.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2) 검토의견: 예비비 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 소요액 계상 필요

-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⁶⁾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³⁷⁾

3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1.)

○ 2025회계연도 개시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9억 4,000만원의 예비비 배정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6억 6,3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음.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비비 배정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요구액	배정액	산출근거
상용임금(110-03)	58	29	3,236천 원×3명×3개월
일반수용비(210-01)	247	170	56,502천 원×3개월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	21	7,163천 원×3개월
특근매식비(210-05)	28	28	9천 원×51명×20일×3개월
임차료(210-07)	24	75	24,987천 원×3개월
유류비(210-08)	2	2	300천 원×2대×3월
복리후생비(210-15)	3	0	500천 원×3명×3/12
기타운영비(210-16)	4	4	((180천 원×4과)+(90천 원×5과))×3월+300천 원×3월
국내여비(220-01)	52	52	870천 원×20명×3월
사업추진비(240-01)	30	30	9,840천 원×3개월
관서업무추진비(240-02)	27	26	8,700천 원×3개월
직책수행경비(250-02)	34	34	11,200천 원×3개월
일반연구비(260-01)	90	90	90백만원×1회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백만원×1회
고용부담금(320-09)	7	3	1,113천 원×3명
공사비(420-03)	72	59	58,704천 원×1식
자산취득비(420-03)	201	0	-
합 계	940	663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이 사업은 자문위원회 구성 지연, 실무지원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음.

○ 이 사업은 예비비 6억 6,3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71.6%에 불과하였으며, 1억 8,8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되었음.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예비비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불용액	집행률 (B/A)
상용임금(110-03)	29	-	29	8	21	27.6
일반수용비(210-01)	170	△20	150	146	4	97.3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	△10	11	11	0	100.0
특근매식비(210-05)	28	-	28	1	27	3.6
임차료(210-07)	75	30	105	101	4	96.2
유류비(210-08)	2	-	2	0	2	0.0
복리후생비(210-15)	0	-	0	0	0	-
기타운영비(210-16)	4	-	4	4	0	100.0
국내여비(220-01)	52	-	52	2	50	3.8
사업추진비(240-01)	30	-	30	29	1	96.7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	-	26	26	0	100.0
직책수행경비(250-02)	34	-	34	26	8	76.5
일반연구비(260-01)	90	-	90	43	47	47.8
정책연구비(260-02)	40	-	40	18	22	45.0
고용부담금(320-09)	3	-	3	1	2	33.3
공사비(420-03)	59	-	59	58	1	98.3
합 계	663	30 △30	663	475	188	71.6

주: 일반연구비 4,300만원, 정책연구비 1,800만원 등 총 6,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자료: 국무조정실)

- 비목별로는 국내여비 5,000만원, 특근매식비 2,700만원, 상용임금 2,100만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국내여비의 경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이 감소하였고, 상용임금의 경우 실무지원 인력의 채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예비비 요구 당시 연내 집행가능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실무지원 인력의 채용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용임금을 3개월분 요구하였다는 점,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의 경우 2025년 집행률이 각각 3.8% 및 3.6%에 불과하였고 2026년에도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각각 6.4% 및 2.4%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추진단 소요 경비에 대한 최초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³⁸⁾
- 또한, 과거에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불용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2025년에도 예비비 요구액과 실제 집행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8) 2026년 6월 말 기준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액 17억 3,400만원 중 6억 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국내여비는 5,700만원 중 1,000만원(6.4%), 특근매식비는 8,300만원 중 200만원(2.4%)이 각각 집행되었음.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19	◦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	○ 향후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을 '20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 '19년 예비비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9.7)에 따른 추진단 신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	조치완료
2023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주의	○ 향후 면밀한 사전준비 및 검토를 통해 예측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 등을 최소화하겠음 - '24년, '25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비비를 요구함으로써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 공통: 징계처분 관련 인사보수 운영 기준의 합리화 필요

1)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속 직원 중 법령,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내부 규정을 두어 징계의 요건, 절차, 효과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 각 연구기관의 징계는 공무원과 유사한 종류로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견책은 징계 사안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 감봉은 일정 기간 급여의 일부를 감하는 것,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해임은 직무를 면하게 하는 것, 파면은 신분의 박탈과 법률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됨.

〈각 연구기관들의 징계 관련 규정〉

기관명	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사규정」 제54조제1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징계지침」 제8조의2, 「인사규정」 제34조
국토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제3항, 「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산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2항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제3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2항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4조제2항
한국개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57조제1항
KDI국제정책대학원	「인사관리규정」 제57조제1항
한국교육개발원	「인사규정」 제57조의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
한국교통연구원	「인사규정」 제38조 2항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인사규정」 제54조제3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의2, 「보수규정」 제7조 제5항
한국법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3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2항
육아정책연구소	「인사관리규정」 제49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제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사규정」 제46조제1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1항
한국행정연구원	「인사규정」 제55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사규정」 제42조제4항
한국환경연구원	「인사규정」 제38조
건축공간연구원	「보수규정」 제11조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개별 연구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징계 규정을 두면서 징계의 효과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됨.

○ 징계의 효과 측면에서 연구기관별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같은 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징계의 효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징계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 및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정직·해임 등 중징계는 단순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또는 기관의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직질서를 유지하고 공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징계의 효과가 기관마다 지나치게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첫째, 일부 연구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개 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보수의 절반을 지급함.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지급이 가능한 기관〉

기관명	지급 수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국토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의 2분의 1 지급
한국노동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중징계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정직 기간에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징계의 제재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³⁹⁾
- 특히, 일부 기관들은 정직 처분 중에도 실제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징계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징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39)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201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정직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례〉

기관명	연도	지급인원	규정개정여부(2026년 8월 기준)
국토연구원	2021년	1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년	2명	○
	2024년	1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21년	1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년	2명	×
	2024년	2명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	1명	○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1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1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년	1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	1명	○

주: 에너지경제연구원(2024년 12월), KDI 국제정책대학원(2022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202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2024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년 12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5년 12월)은 이후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둘째, 기관마다 징계처분의 종류가 다르고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도 다르게 운용함.

○ 즉, 견책·감봉·정직·해임 4단계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기관, 강등을 포함하여 5단계로 나누는 기관, 파면까지 6단계로 세분화한 기관 등 그 양태가 다양함.

〈기관별 징계의 종류〉

기관명		징계의 종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국토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산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에너지경제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통일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개발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파면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직원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한국교육개발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교통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노동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법제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육아정책연구소		견책, 감봉, 정직, 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한국행정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환경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파면
건축공간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기관마다 징계처분에 적용되는 승진 제한 기간도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 대부분의 기관이 견책, 감봉, 정직에 대해 각각 처분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의 승진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데 반해, 한국노동연구원은 2회 이상의 견책의 경우에 비로소 6개월, 감봉과 정직도 각각 6개월 및 1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견책, 감봉, 정직에 대해 각각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규정하는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다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승진 제한 기간을 달리 규정한 사례〉

기관명	징계처분		
	견책	감봉	정직
20개 기관	6개월	12개월	18개월
산업연구원	12개월	12개월	24개월
에너지경제연구원	6개월(12개월)	12개월(18개월)	18개월(24개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개월	6개월	12개월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2회 이상에 한정)	6개월	12개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개월(12개월)	12개월(18개월)	18개월(24개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6개월(9개월)	12개월(15개월)	18개월(21개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개월(2회이상에 한정)	12개월	18개월

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괄호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채용비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따른 것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각 연구기관은 설립목적, 연구 분야, 조직 규모 및 인사 운영체계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나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상 효과를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임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징계의 종류나 승진 제한 기간 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징계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을 기본으로 산정하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 비위, 채용 비리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가산 기간을 두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일부 연구기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개 기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능률성과급을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아니하고 있음.⁴⁰⁾
-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5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성과급 및 능률성과급 지급요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 한국노동연구원: 별도 규정 없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능률성과급 지급 배제를 명문화 하였으나, 규정개정 이전에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자가 560만원의 능률성과급을 수령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도 2025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규정 개정 이전에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의 직원에게 총 약 410만원의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2024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규정개정 이전에 정직 처분을 받은 자가 650만원의 능률성과급을 수령함.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단위: 천원)

기관명	연도	지급인원	총 지급액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년	1명	1,148
	2025년	1명	5,590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1명	385
	2025년	2명	4,072
KDI 국제정책대학원	2021년	1명	6,293
	2022년	1명	2,4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년	2명	13,400
	2024년	2명	12,400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	1명	5,971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1명	37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년	1명	6,48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	1명	65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능률성과급은 인건비 예산 외에 초과수입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기관의 성과 향상과 우수한 업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제도인데, 중대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중징계는 조직질서와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넷째, 일부 연구기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전문성 활용제도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 등 13개 기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직 후 전문성 활용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¹⁾

41) 국토연구원: 퇴직자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규칙,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공로자우대제도 운영규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로우대자 운영요령,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준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공로자 임용지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위원 운영지침, 한국법제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규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지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로우대자 운영지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년 퇴직직원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명예위원 운영지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위원 운용규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로연구위원 임용규칙, 건축공간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지침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는 기관이 퇴직자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을 연구 및 정책지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에 부합함.
- 그럼에도 중대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까지 별도의 제한 없이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징계의 실효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시 채용하거나 위촉하는 제도의 취지와도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참여를 제한하거나, 참여 필요성과 적정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종합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직 중 보수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징계 시 승진제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운용하며, 징계자에 대한 능률성과급 지급 및 퇴직 후 전문성 활용제도 참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무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3.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⁴²⁾.

□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⁴³⁾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1% 이상은

4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로 사용하여야 함.

2) 검토의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개 기관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법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1.1% 이상) 실적을 달성하지 못함.

〈2025 회계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

(단위: %)

기관명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구매비율	1.1% 준수여부
경제인문연구회	4.04	준수	1.39	준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45	준수	8.14	준수
국토연구원	3.97	준수	2.93	준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45	준수	3.20	준수
산업연구원	2.85	미준수	1.98	준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89	미준수	2.70	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02	준수	2.58	준수
통일연구원	4.89	준수	2.03	준수
한국개발연구원	3.85	미준수	4.87	준수
KDI국제정책대학원	3.83	준수	1.25	준수
한국교육개발원	3.71	준수	1.43	준수

(단위: %)

기관명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구매비율	1.1% 준수여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32	준수	0.92	미준수
한국교통연구원	3.81	준수	1.01	미준수
한국노동연구원	2.84	미준수	3.27	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53	준수	1.10	준수
한국법제연구원	4.03	준수	2.49	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5	준수	6.62	준수
육아정책연구소	3.80	준수	14.11	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6	미준수	7.45	준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81	준수	2.36	준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79	준수	2.23	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13	준수	1.91	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94	준수	1.32	준수
한국행정연구원	2.90	미준수	1.25	준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51	미준수	3.62	준수
한국환경연구원	4.00	준수	6.79	준수
건축공간연구원	4.17	준수	16.96	준수

주1: 고용률이 3.8% 미만임에도 '준수'로 표기된 경우는 의무고용인원 산정 기준(상시근로자 수*0.038 후 소수점 이하 절사)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은 충족했으나, 환산 고용률이 3.8% 미만으로 나타난 사례임.

주2: 고용률이 3.8% 이상이나 미준수로 표기된 한국개발연구원은 연평균 의무고용률은 충족하였으나, 일부 월에서 미달하여 '미준수'로 표기함.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2024 회계연도 (6,347만원)보다 약 34% 증가한 8,515만원에 달함.

〈2025 회계연도 고용부담금 납입액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고용부담금 납입액*	부담금 납부재원	
		본예산	이월금·자체수입 등**
산업연구원	9,762	9,762	-
에너지경제연구원	20,964	20,964	-
한국개발연구원	4,881	1,258	3,623
한국노동연구원	11,641	11,64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101	-	5,101
한국행정연구원	27,773	27,773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027	5,027	-
합 계	85,149	76,425	8,724

* 2025년도 결과에 대한 납부금액 기준으로 작성

** 이월금·자체수입: 출연금 이월액, 수탁용역사업 수입, 기타 수입, 이자 수입 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노동연구원조차 2년 연속 법정 의무 고용률에 미달함.⁴⁴⁾

44)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4회계연도 1.89%(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함 27개 기관 중 최하위), 2025 회계연도 2.8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함 27개 기관 중 26위)에 불과함.

〈연도별 한국행정연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단위: 명, %, 천원)

연도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인 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고용부담금 납입액
2022	173.5	6.2	5.9	3.41	미준수	9,117
2023	178.1	6.4	4.9	2.76	미준수	28,708
2024	165.1	6.3	4.3	2.57	미준수	27,411
2025	166.5	6.3	4.8	2.9	미준수	27,77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각 연구기관들은 연구직 중심의 인력구조로 인하여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인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적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따라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 전산장비 관리, 도서관 콘텐츠 입력 등 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의견임.

□ 연구직 중심의 인력구조와 장애인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장애인 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음.

○ 특히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법정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법령이 추구하는 정책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담금 납부만으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노동·복지·교육·사회 정책 등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정책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별 직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적합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의 활성화,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법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구매계획의 사전 수립과 정기적인 실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공통: 정보화사업의 기본연구사업(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 타당성 검토

1) 연구사업의 분류: 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사업)과 일반사업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연구사업을 기관
고유사업,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으로 구분하고,
이 중 기관고유사업은 다시 기본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으로 분류
하고 있음.⁴⁵⁾

○ 일반사업은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이나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설비와 함께 특수사업으로 명명됨.

〈연구사업의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 (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4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23

2)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은 일반사업에서 연구지원사업으로 변경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25 회계연도에는 총 123억 1,300만원의 예산 중 12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정보화 사업의 상당수가 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5 회계연도 기관별 정보화 예산〉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	예산	결산	시작연 도
합계		12,312,601	12,171,225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사업	302,000	302,000	2010
	출연연 통합 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250,000	1,250,000	2014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사업	1,266,000	1,262,815	2017
	출연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800,000	785,599	2022
	출연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구축 및 운영	690,000	689,801	2025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40,000	223,098	2010
국토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101,000	99,548	2016
국토연구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380,000	378,414	2017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KIEP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350,000	316,862	2007
산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260,000	260,000	2016
에너지 경제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0,000	198,964	2015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83,000	183,000	2017
통일연구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59,000	59,000	2010
한국개발 연구원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8,000	440,888	2016
KDI국제 정책대학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285,000	284,558	2024
	교육인프라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발	121,000	116,634	2006
한국교육 개발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824,000	824,000	2003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	예산	결산	시작연 도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운영	344,000	344,000	2024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00,000	100,000	200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축	74,000	74,000	2011
	수능 성적제공 등 보안인프라 구축	70,000	70,000	2021
	교육데이터 공유 선순환을 위한 KICE 지 능형 플랫폼 구축	150,000	150,000	2023
한국교통 연구원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85,000	85,000	2019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	69,000	69,000	2016
한국노동 연구원	통합 유지보수 사업	180,331	180,324	2019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사업	145,000	144,838	2019
한국법제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345,000	340,896	201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257,000	257,000	2011
육아정책 연구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35,000	134,991	2008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성평등 지식플랫폼 운영 사업	400,000	377,000	2022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270,000	268,240	2011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294,270	295,216	2003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및 기간제시스템 운영지원	144,000	143,665	2013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90,000	90,000	2017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17,000	216,957	2011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109,000	108,967	2017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210,000	210,000	2015
한국행정 연구원	E-KIPA 지식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256,000	241,422	2008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	169,000	168,314	2011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96,000	95,474	2011
한국환경 연구원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135,000	135,000	2016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64,000	63,740	2016
건축공간 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135,000	132,000	2012

주. 연혁은 해당 사업의 최초 시작연도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보시스템 사업은 그 성격상 한시적 사업이 아닌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운영되는 필수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지속적으로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먼저, 비록 여러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편성과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심의를 받는 기관고유사업과 달리, 일반사업은 개별 연구과제마다 매년 재정당국으로부터 그 타당성을 심의받아야 하는데, 필수사업에 가까운 정보시스템 예산에 대해 매년 존속 여부의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 낭비의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일반사업은 재량지출에 해당하여 舊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0% 이상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필수적인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마지막으로 편성의 비일관성의 문제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과 별도로 기관고유사업에 전산운영사업 등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은 그 지출목적과 내용이 실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화관련 사업은 모두 기관고유사업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정보시스템·전산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전산지원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 바이러스 백신 및 내 PC자킴이 라이선스 계약 - 노후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국토연구원	정보기술비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보전산운영 사업	-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산업연구원	2023 전산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보안서버(mOTP) 구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정보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 그룹웨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추진
에너지경제 연구원	에너지·자원 전산 NETWORK 운영	- 성과확산시스템 고도화 마스터 플랜(ISMP) 수립 -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록물생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통합정보시스템 (KEEI-ERP) 웹표준화 및 호환성사업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전산개발 운영	- KISDI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등 유지보수 -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 백신사용료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서버 및 스토리지, 차세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 웹메일 보안 SMS 서비스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통일연구원	전산시스템 운영·유지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 항온항습기 및 UPS유지보수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 노후내부망 자료전송 서버구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한국개발 연구원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 하드웨어 구입 - 소프트웨어 사용료 - 경제정보센터 웹시스템 유지보수 - 포탈시스템 및 MIS 기능 고도화 -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백신 및 보안,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료 - 포탈, 서버, 방화벽, V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교육 개발원	정보자료·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한국교통 연구원	전산개발사업	- 신규 웹사이트 보안 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훈련 사업 - 인사노무 전자 시스템 유지 및 기능개선 용역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연구 및 행정업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 - 문서중앙화 솔루션 유지관리를 위한 에이전트 기능개선 사업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	- 보안솔루션 구매비
한국노동 연구원	정보자료 (전산) 운영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 근로시간 관리 기능 개선사업	통합유지보수 사업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	- IT인프라,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공간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 홈페이지 및 CRM 유지보수 - 노후 DB서버 교체 - 침입탐지시스템 도입
한국법제 연구원	법제정보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 템 유지관리사업	- 각종 라이선스 및 백신 구입 - 정보보호 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국영문 홈페이지,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원내 서버(MIS, CAPI 등)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지원 전산운영	- 정보보안감사용 PC렌탈	통합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 통합유지보수대금
			전산실 운영사업	- 전산실 인터넷 전용선, 전기 사용료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정보시스템 운영	- 기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구축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전산운영부문 운영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 보안 관련 라이선스 계약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평생직업교육 훈련 정보화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제시스템 운영 지원	-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서버 변경사업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HRD웹정보 서비스 생성·운영사업	- 리포지터리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등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전산·정보시스 템 관리 및 운영	- 웹메일 및 메신저 유지보수 - 전자도서관 솔루션유지보수 - 원대표홈페이지 기능수정 개선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장비유지보수 - H/W 통합 유지보수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소프트웨어 구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전산개발 및 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보안시스 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 KMI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행정 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E-KIPA지식 행정포털시스 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환경 연구원	전산운영	- KEI 연구 업무 시스템 서버 SSD교체 및 윈도우 서버 라이선스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 KEINS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 KEI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용역
건축공간 연구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 보안 소프트웨어 임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정보화사업비를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⁴⁶⁾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여전히 상당수의 정보화사업비를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기관고유사업비가 기관운영비에 속하는데,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가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의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일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의 상당수는 10년 이상 계속 수행되어 온 상시·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연구기관의 연구지원과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비를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는 만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화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상시적·경상적인 정보화 사업을 선별하여 해당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46) 2026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한시적 사업을 위한 일반사업비에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보화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한다.

으로 봄.

- 예컨대, 신규 시스템 구축, 대규모 기능개선 등 종료 예정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두되, 상시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⁴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연구 정책의 지원과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30억 8,100만원 중 223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2,122	22,122	959	-	-	23,081	22,312	241	528	32,36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보완 필요 등

(1)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보완 필요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생산한 정책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지식 플랫폼으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47) 세부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지식정보법”)에 따른 국가지식
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⁴⁸⁾

- 2022년 4월 기준 국가정책연구포털에는 약 8만 9천여 건의 정책연구
성과물이 구축되어 있으며,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정책연구의 활
용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지식 인프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2025 회계연도의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사업은 예산현액 3억
3,7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302	302	35	-	-	337	337	-	-	30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가정책연구포털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지식정보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에 해당함.

- 국가지식정보법 제8조⁴⁹⁾는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을

4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49)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①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실태 점검, 국가기관 간 협의·조정 등 국가지식정보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⁵⁰⁾

〈법령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기관 및 직위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교육부차관	위원(법률)
행정안전부차관	위원(법률)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위원(법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위원(대통령령)
산업통상부차관	위원(대통령령)
보건복지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고용노동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국토교통부차관	위원(대통령령)
해양수산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기획예산처차관	위원(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위원(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위원(법률)

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0)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러나 국가정책연구포털의 운영체계를 고려할 때 현행 국가지식정보 위원회의 구성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국가정책연구포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고, 구축된 연구성과물의 대부분 역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정책연구 결과물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무조정실 소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국가지식정보의 주요 생산·관리 주체를 소관하는 국무조정실은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지식정보위원회는 단순히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운영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가지식정보의 구축·활용 정책과 국가기관 간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정책 연구포털의 운영기관을 소관하는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정책 수립과 집행 간 연계성 및 거버넌스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국가정책연구포털의 운영 방향, 연구성과의 개방·활용 확대, 정책 연구정보의 연계 및 품질관리 등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인 국무조정실이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심의·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정책연구포털의 운영체제와 국무조정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리·감독 기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지원부서의 생성형 AI 구독 예산 편성기준 마련 필요

□ ‘생성형 AI’⁵¹⁾는 연구보고서 작성이나 자료 조사와 같은 연구업무뿐만 아니라 기획·인사 등 연구지원 업무에서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4개 출연연구기관⁵²⁾의 연구지원부서는 2025년도에 총 1억 2,732만원을 생성형 AI 구독료로 집행하였음.

〈연구지원부서의 생성형AI 구독료 집행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부서 유형별 집행 금액								
	합계	경영 기획	홍보	인사	총무	예산	회계	감사	기타
총계	127,322	33,602	13,640	6,796	4,235	12,413	6,435	5,232	44,969
연구회	17,967	-	-	-	-	-	-	-	17,967
과학	8,669	2,752	2,046	296	296	590	590	329	1,770
국토	4,376	4,194	44	-	138	-	-	-	-
대외	3,987	417	417	417	-	417	417	417	1,485
산업	1,896	-	-	-	-	-	-	-	1,896
에너지	10,108	3,849	482	482	482	482	482	-	3,849
정보	4,230	1,566	821	-	-	1,843	-	-	-
통일	3,340	2,905	244	191	-	-	-	-	-
KDI	2,666	1,396	382	-	-	-	-	-	888
대학원	9,817	524	1,501	1,090	797	586	1,090	494	3,735
교육	1,036	-	192	-	-	173	-	480	191
평가원	993	-	380	-	-	-	-	-	613
교통	3,171	993	-	-	-	2,178	-	-	-
노동	6,626	2,766	-	72	46	1,355	237	23	2,127

51) ChatGPT, Gemini 등

52)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해당사항 없음.

기관명	부서 유형별 집행 금액								
	합계	경영 기획	홍보	인사	총무	예산	회계	감사	기타
농촌	9,197	3,429	845	901	-	917	980	1,279	846
법제	3,954	-	-	-	-	-	-	-	3,954
보사	2,545	273	307	202	170	173	171	-	1,249
여성	542	-	-	-	-	-	-	-	542
조세	2,437	162	162	325	325	162	325	488	488
청소년	2,609	-	731	-	-	-	-	128	1,750
해양	155	155	-	-	-	-	-	-	-
행정	5,751	1,417	1,084	760	570	987	203	345	385
형사	7,388	1,347	970	1,173	579	1,482	872	576	389
환경	6,881	1,402	2,610	422	422	336	422	422	845
건축	6,981	4,055	422	465	410	732	646	251	-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그런데 기관별 연구지원부서에서 생성형 AI 구독료로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구독료임에도 연구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수용비, 공공요금 등 다양한 예산비목으로 집행하였음.

〈연구지원부서의 생성형 AI 구독료 집행 사업·비목 현황〉

부서	집행사업	비목
경영기획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수용비, 공공요금
	경상운영비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홍보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수용비, 공공요금
	경상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적립금	수용비
인사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부서	집행사업	비목
	경상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총무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공공요금
	일반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경상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공공요금
	경상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회계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경상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감사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경상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기관별 생성형 AI 예산 편성 비목이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2025년 8월 기관 설명회를 통해 연구정보활동비로 편성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2026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 운용지침」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함⁵³⁾.

□ 그런데, 연구정보활동비는 연구사업비에 편성 가능한 비목으로,

53) 「2026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 운용지침」 p. 31

사업비 (7) 연구정보활동비

(가) 정의: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연수,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

(나) 세부지침 중 일부

- 연구사업 내 AI 활용 시 투명성·재현성·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국책연구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며, 보안·개인정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분	내용
연구정보활동경비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AI 기반 서비스·도구 활용 경비 등
연구자료구입비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학술정보 DB 사용료 등 자료 구입비
특근매식비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경상운영비에는 별도의 연구정보활동비 비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연구지원사업비 내 관련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는 생성형 AI 구독료를 기관별로 서로 다른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가능성이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지출예산 각목명세서 양식(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관	항	세 항	목
Ⅱ. 연구사업비	1. 기관고유사업비		사업인건비
	가. 기본연구사업	○○○부문	공공요금
	나. <u>연구지원사업</u>	○○○부문	수용비
	2. 일반연구사업비	○○○부문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3. 청년인턴ship운영	○○○부문	여비
	4. 수탁용역사업비	○○○부문	<u>연구정보활동비</u>
Ⅲ. 경상운영비	5. 정부대행사업	○○○부문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1. 기본공과금		공공요금
			체세공과금
	2. 자산관리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3. 인력관련경비		비정규직인건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교육훈련비
			채용경비
	4. 기타운영비		수용비
			전문가활용비
			여비
			외부용역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 생성형 AI 구독료는 업무수행에 활용되는 도구의 이용료라는 점에서 기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동일한 성격의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경우 기관 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구독료 예산의 편성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산업연구원⁵⁴⁾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기술, 산업별 통상 및 지역산업에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산업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256억 5,300만원 중 242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연구원	23,973	23,973	1,680	-	-	25,653	24,282	1,300	71	30,230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예산 편성 및 파견인력 운영 개선 필요

□ 산업연구원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⁵⁵⁾과의 실질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54) 세부사업: 산업연구원(1535-301)

55)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10개국임.

정책지원을 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동남아 정책 연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운영하고 있음.

- 센터의 2025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00만원을 합친 8억 2,200만원으로 그 산출 근거는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1억 4,200만원,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억 4,200만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3억 4,300만원 등으로 구성됨.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745	745	77	-	-	822	822 (742)	80	-	633
- 사업인건비	142	142	-	-	-	142	142 (138)	4	-	118
- 공공요금	1	1	3	-	-	4	4 (3)	1	-	1
- 수용비	32	32	4	0	0	36	36 (24)	12	-	32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85	85	57	-	-	142	142 (118)	24	-	128
- 여비	89	89	-	-	-	89	89 (77)	12	-	118
- 연구정보활동비	2	2	-	-	-	2	2 (-)	2	-	2
- 전문가활용비	30	30	-	-	-	30	30 (21)	9	-	57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센터는 본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연락사무소로 구성되는데, 본부는 아세안 관련 정책의제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부처·유관기관

과의 협력 및 지식 축적을 담당하는 정책 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현지 연락사무소는 현지 대사관,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정부, 현지에 진출한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정보 수집, 사업 협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아세안 현지 연구를 지원하는 현장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었음.

□ 본 사업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와 예산집행을 부진, 예산편성 및 파견인력의 구성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아니함.

○ 산업연구원은 현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를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당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있음.

○ 즉, 산업연구원은 2025 회계연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파견 인력의 인건비 약 8,100만원과 거주지 및 차량 임차료 4,9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본 사업의 예산에서 집행하였음.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인건비 등에 사용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해당 비용의 적정 예산과목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산업연구원이 두고 있는 북경지원사무소를 비롯하여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은 모두 기본운영비 예산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출은 집행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해외사무소 파견인력의 출연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사무소명 (사업명)	인건비 (지출 예산과목)	임차료 (지출 예산과목)	기타 (지출 예산과목)	합계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운영)	343,926 (기본운영비)	88,449 (기본운영비)	9,557 (기본운영비)	441,932
	KIEP 텔리사무소 (KIEP 텔리사무소 운영)	296,561 (기본운영비)	111,489 (기본운영비)	6,603 (기본운영비)	414,653
산업연구원	자카르타 연락 사무소 (한-동남아 정책연구 협력센터 운영)	81,065 (사업비)	49,000 (사업비)	2,600 (사업비)	132,665
	북경지원 사무소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사업)	60,000 (기본운영비)	36,000 (기본운영비)	-	96,000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운영)	239,810 (기본운영비)	70,756 (기본운영비)	-	310,566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 운영)	189,484 (기본운영비)	52,755 (기본운영비)	-	242,239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다음으로, 파견인력의 구성 측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직원의 파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5년까지 현지사무소에는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 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1명을 파견하였고, 이 중 연구회 파견직원은 국가별 정책연구 기획,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아세안 역량강화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⁵⁶⁾

〈현지 연락사무소 인력구성 현황〉

소속	직위	주요 역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장)	업무총괄 - 대사관 정책지원 - 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 대응 - 사무소 운영 총괄(행정 및 회계 등)
연구회	전문위원 (파견 중)	연구기획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 국가별 맞춤형 정책연구 기획 - 국제기구, 각국 대사관 및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 아세안 지역 역량 강화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파견종료)	산업협력 및 민간부문 네트워킹 - 산업계 현장 의견 청취 및 반영 - 현지 진출 기업 네트워킹

(자료: 산업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을 파견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개별 연구기관 간 업무조정 및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의 파견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6) 2026년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직원 파견은 종료되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의 파견만 이루어지고 있음.

첫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설립목적 측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조정과 경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관리·지원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현지사무소의 운영에 연구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연구회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둘째, 파견직원의 역할과 업무성과의 측면에서, 2025 회계연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이 현지사무소에서 달성한 업무성과는 일부 국제 세미나 공동 기획 외에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셋째, 다른 연구사무소와의 비교 측면에서 보면, 산업연구원의 본 현지사무소 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다른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연구회 직원이 별도로 파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각 해외사무소 인적 구성 현황(2025년)〉

(단위: 명)

기관명	사무소명(소재지)	인력		
		본원 파견	타기관 파견	현지 채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 (중국 북경)	2	-	3
	KIEP 델리사무소 (인도 뉴델리)	2	-	2
산업연구원	자카르타 연락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	2	-
	북경지원 사무소 (중국 북경)	1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사무소 (중국 북경)	1	-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중국 상해)	1	-	1

* 현지 채용 인력은 비정규직 인력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해외 현지사무소는 현지 연구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회가 직접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6. 에너지경제연구원⁵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에너지경제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27억 4,900만원 중 120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에너지경제연구원	12,374	12,374	375	-	-	12,749	12,047	238	464	25,48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노트북 등 휴대용 자산관리체계 개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서는 각 연구기관의 자산관리책임자는 적절한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총괄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57) 세부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1536-301)

하도록 하고 있음.⁵⁸⁾

□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부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⁵⁹⁾

□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산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자산의
파손 및 분실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산관리체계의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3년 3건, 2024년 1건, 2025년 4건의 노트북
파손 또는 분실 신고가 있었고, 제출자료에 따르면 모두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노트북 파손 및 분실 현황〉

(단위: 원)

연도	사유 및 건수	손실단가
2023년	개인 부주의에 따른 파손 1건	352,784
	개인 부주의에 따른 분실 2건	322,592
		397,592
	소계(3건)	1,072,968
2024년	개인 부주의에 따른 분실 1건	1,165,683
	소계(1건)	1,165,683
2025년	개인 부주의에 따른 분실 3건	822,122
		367,200
		359,040
		367,200
	소계(4건)	1,915,562
총계	8건	4,154,21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p. 23

59) 제38조(재고조사) 재고조사는 년 1회 이상(기말을 필히 포함)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장부가격과 대조하여 소정의 증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히 다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노트북 손실·망실 신고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비록 자산을 손실하거나 망실한 직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변상금은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동일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데 추가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산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2024년과 2025년에는 도서자료의 손·망실 신고도 확인되었는데, 노트북 및 도서자료의 파손 및 분실 사례 가운데 상당수⁶⁰⁾는 퇴직 예정자가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퇴직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파손이나 분실이 확인된 사례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실제 자산의 분실 또는 훼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자산관리의 적시성과 추적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이러한 사례는 연례적인 재물조사만으로는 자산의 실제 보유 여부와 관리상태를 적시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60) 2023년부터 2025년까지 8건의 노트북 파손 및 분실 사례 중 5건, 2025년의 도서자료 분실 사례는 모두 퇴직 예정자가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것임.

것으로, 자산의 사용·이동·반납 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 따라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자산 파손 및 분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노트북 등 휴대용 자산의 사용·반납 등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퇴직절차 이전에 자산 반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휴대용 자산의 정기적인 현황 확인, 직원 대상 자산관리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포함)⁶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 연구 수행과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관련 사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90억 7,500만원 중 467억 9,100만원이 집행되고, 10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연구원	47,316	47,316	1,759	-	-	49,075	46,791	1,033	1,251	61,26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소속의 전문교육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20억 500만원 중 212억 1,400만원이 집행되고,

61) 세부사업: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6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5,000만원이 불용됨.

〈2025회계연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21,407	21,407	598	-	-	22,005	21,214	641	150	22,92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해외연수·학술파견제도 성과관리 강화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기관운영비를 통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연수와 학술 목적의 연구 파견을 행하고 있음.

○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회계연도에 소속 직원 9명을 대상으로
업무연수 목적으로 총 약 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국개발연구원의 업무연수 집행내역〉

(단위: 천원)

장소(연수기간)	출장자 직급	집행액
미국(2024.10.~2025.2.)	전문위원	12,379
캐나다(2025.12.~2026.2.)		11,319
캐나다(2024.12.~2025.4.)		29,477
일본(2025.4.~2025.7.)		31,233
스페인(2025.5.~2025.6.)		21,117
독일(2025.7.~2025.10.)		30,215
미국(2025.5.~2025.8.)		24,288
필리핀(2025.12.~2026.2.)		6,572
미국 하와이, 일본(2025.12.~2026.4.)		10,189
총계		176,789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또한, 한국개발연구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각각 1~2년의 기간으로 소속 연구자를 외국의 대학 또는 국제 기구에 파견하였는데, 2025회계연도가 포함된 전체 파견기간에 대한 총 집행액은 각각 약 5억 4,900만원, 9,600만원임.

〈기관별 학술파견·국제기구파견 집행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출장자 직급	파견기관	기간	집행액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ECD	2023.2.~2025.3.	210,035
	연구위원	World Bank	2025.5.~2027.6.	115,037
	선임연구위원	UC San Diego	2024.8.~2025.9.	72,142
	연구위원	UC San Diego	2024.8.~2025.9.	59,950
	선임연구위원	베트남 사회과학원	2025.9.~2026.9.	51,673
	선임연구위원	UC San Diego	2025.12.~2027.1.	40,480
	소계			549,317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George Washington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24.1.~2025.1.	58,656
	교수	George Washington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25.5.~2025.12.	37,562
	소계			96,21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한국개발연구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업무연수 및 학술 파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됨.

- 첫째, 업무연수 제도가 업무역량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025회계연도에 파견되었던 9명의 출장자가 제출한 업무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파견자 중 6명은 해외 소재 학원 등에서 어학 연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부 연수자는 주요 연수 내용으로 ‘기본단어 외우기 및 쓰기’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였고, 어학원에서 실시하는 회화 프로그램 수강을 연수 내용으로 작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또한, 일부 연수자는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 세미나 참가 실적을 제출하거나, 방문한 도시의 일반 현황을 연수 내용으로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업무연수가 기관의 업무역량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둘째, 두 기관이 운영하는 학술 목적의 파견 제도 역시 파견목적에 상응하는 성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음.

2025회계연도 한 해 기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해외 기관에 학술 목적으로 파견된 바 있는 6명의 연구자 중 파견이 종료된 3명의 연구자가 제출한 파견 성과보고서를 보면,

OECD에 파견된 선임연구위원은 파견 기간이 2년이 넘는데도, 분기별 1페이지의 활동보고서와 6페이지의 결과보고서만 제출⁶²⁾하였고, UC San Diego에 파견된 2명의 연구자는 국내사례와 국내 데이터

62) 한국개발연구원은 OECD에 파견된 연구자는 OECD 내에서 회원국 재정제도 연구, 고위예산당국자 회의 및 재정 포럼 지원 등의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답변함.

만을 이용하여 연구⁶³⁾ 결과를 도출하였는바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 전문 교육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파견된 2명의 교수가 제출한 연구결과도 총 30페이지 남짓의 짧은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들 연구 모두 미국 현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가 아닌 파견자 단독 연구로서 미국의 정책 경험이나 사례보다는 기존 국내연구 등에서 검증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거나, 심지어 수치 오류, 표(table) 또는 그래프(figure) 누락,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문구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⁶⁴⁾

아울러 2025년 1월에 종료된 파견의 경우 1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부규정⁶⁵⁾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현재

63) 해당 연구보고서는 각각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한 소득지원 연구: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연구’임.

64)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파견 연구를 종료한 교수의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국가 채무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인데, 논문의 초록과 본문에서는 노령의존율이 1% 증가할 때마다 국가채무 비율이 0.3%~0.4% 증가한다는 결론을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검증표에 따르면 노령의존계수가 3.794(FE), 3.783(RE), 3.308(FGLS)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노령의존율 1% 상승 시 국가채무비율이 3.7%~4.2% 증가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 결론과 근거가 불일치 함. 또한, 2025년 12월에 파견을 종료한 교수의 연구주제는 ‘한국 노년층의 기술 수용 행태’인데, 서론에서 논문작성자가 추후 보완하겠다고 단순 메모해둔 내용이 보완 없이 그대로 최종본에 적시된 채 제출됨.

By 2023, this percentage doubled to 10 percent, with 804 million people. It is projected to double again by 2070, reaching 20.01 percent of the total global population. (UN, 2024). (add comparison between advanced vs. developing countries).

65) KDI 국제정책대학원 학술파견시행규칙 제13조(결과보고) ③ 전항의 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저널에 발표하거나 연구원의 계간지, 단행본, 연구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학술파견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료 및 기타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까지 발간이 지연되고 있음.

□ 업무연수와 학술 목적의 해외파견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해외에 파견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연구기관 전체의 연구역량 향상으로 환류시키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은 업무연수 및 학술 파견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것 외에 정책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별도의 평가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구성과를 다음 파견자 선정이나 제도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해외 업무연수 및 연구 파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연구 파견의 경우, 종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향후 파견자 선정과 제도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업무연수 결과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대외에 공개하여 성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연구기관 구성원과 정책수요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투입에 따른 공공성과 성과의 활용도를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업무연수는 직원 복지 차원의 해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의 정책연구 역량과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어학원 중심의 연수는 최소화하고 연구·정책 분야와 연계되는 전문교육, 국제기구 연수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성과 중심의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한국교육개발원⁶⁶⁾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현액 223억 6,500만원 중 21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개발원	22,079	22,079	286	-		22,365	21,315	195	855	28,62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한국교육 종단연구는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연구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5억 9,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66) 세부사업: 한국교육개발원(1540-301)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실태조사 연구는 교육단계별 학교 수준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가수준의 주요 지표체계와 연동한 교육지표 산출 근거를 제공하는 등의 일반연구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4억 9,6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이월하였음.

수요맞춤 고등교육성과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연구는 대학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 성과 정보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출하고 있는 양질의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공개하여 대학 수요자의 실제적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일반연구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3억원 중 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이월하였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6년 예산
	본예산	추경							
(기본연구) 한국교육 중단연구	582	582	8	-	590	590	-	-	603
(일반연구) 공교육 모니터링연구	460	460	36		496	475	21	-	405
(일반연구) 고등교육 성과관리 (한국의 고등 교육 동향)	300	300	-	-	300	297	3	-	3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은 동 연구원의 조사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학술·현장 연구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에 ‘제19회 KEDI⁶⁷⁾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제19회 KEDI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개요〉

- 행사목적: KEDI 조사 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학술·현장 연구 활성화 등
- 일시: 2025. 12. 4.(목), 09:30 - 17:10
- 장소: aT센터 3층, 세계로룸 I ~ III, 미래로룸 I ~ II(총 5실)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주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참여인원: 연구자, 교수, 대학원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250명
- 행사 운영
 - 발표: 연구논문 분과(13개)별로 3 ~ 4편, 총 41편 발표
 - KEDI Insight Wall: 연구, 사업 소개 포스터 총 12편 게시
 - 대학원생 경진대회: KEDI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내 별도 세션으로 진행(수상작 5편 발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동 학술대회는 2007년부터 2022까지 한국교육 종단연구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부터 대학교육혁신모니터링 연구 등 학술대회 참여 연구과제 수와 관련 예산 및 집행액이 증가하였음.

67)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최근 3년간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개최 현황〉

(단위: 만원)

구분	17회(2023년)	18회(2024년)	19회(2025년)
일시/ 장소	2023. 11. 24.(금) 09:30 ~ 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024. 12. 12.(목) 13:30 ~ 18:00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	2025. 12. 4.(목) 09:30 - 17:10 aT센터 3층(세계로룸, 미래로룸)
참석자	약 300명	약 250명	약 250명
참여 과제 수	2개 - 한국교육중단연구 - 대학교육혁신모니터링연구	4개 - 한국교육중단연구 - 대학교육혁신모니터링연구 - 한국초등교원중단연구 - 공교육모니터링연구	6개 - 한국교육중단연구 - 대학교육혁신모니터링연구 - 한국초등교원중단연구 - 공교육모니터링연구 - 평생학습실태조사 - 고등교육성과관리연구 (한국의 고등교육 동향)
예산액	4,927	4,982	6,163
집행 총액	4,326	4,874	6,08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은 당초 동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기본연구사업인 한국교육중단연구와 일반연구사업인 공교육모니터링연구 및 고등교육성과관리에 6,16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외 기타 13개 사업에서 2,046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전체 집행액은 8,134만원임.

〈제19회 KEDI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관련 편성·집행내역〉

(단위: 만원)

구분	편성액 ⁶⁸⁾	집행액	비고
한국교육중단연구	2,118	2,088	대학원생 경진대회 심사 수당 등(1,660)
			행사 식대 등 회의비(588)
			행사장소 임차료 등(513)
			행사 물품 등(101)
			행사 관련 직원 출장(180)
공교육모니터링연구	2,545	2,500	행사 지원 용역 대금(2,500)
			행사 관련 직원 출장(22)
고등교육성과관리 (한국의 고등교육 동향)	1,500	1,500	자료집 복사 제본비(160)
			발표수당 등(150)
			식대 등 회의비(43)
			행사 지원 용역 대금(15,000)
			행사 관련 직원 출장(142)
기타 13개 사업 ⁶⁹⁾	-	2,046	연구기자재임차료 및 전문가활용비(139)
			행사 관련 직원 출장 등 기타(1,907)
합 계	6,163	8,1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비 등을 분산하여 집행하는 것은 출장비는 각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불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 행사의 개최·참여와 관련된 비용이 다수 사업에 분산 계상됨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된 전체 재정 규모와 개별 사업별 비용 부담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68) 2025년도 각목명세서상 편성된 내역

69) 교사출립현상과 대응방안 연구(기본연구과제), 데이터기반 대학교육혁신 모니터링 연구(Ⅲ) 및 한국초등교원중단연구(V)(일반연구과제), (이하 수탁연구과제)2025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2025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시도분담금)_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방안, 유·초·중등교육기관 통계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분석, 교육통계 DB제공 및 분석 서비스, 유·초·중등 통계연보 발간 프로그램 개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25년 늘봄중앙지원센터 운영 사업, 2025년 국가 영재교육 지원 사업

- 또한 참여 연구과제 수는 2023년 2개에서 2025년 한국초등교원종단 연구 등 6개로 증가하였음에도 행사 운영비는 한국교육종단연구, 공교육모니터링연구, 고등교육성과관리 등 특정 사업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비용부담 기준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⁷⁰⁾에 따르면,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회의, 번역, 간행물 발간 등을 하는 사업은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동 학술회는 특정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연구성과 확산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70)

<연구기관 연구사업 구분>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u>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u>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 (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자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 운용지침)

□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기관 차원의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와 같이 연구성과 확산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별 연구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술대회와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 및 사업별 비용부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가 행사 운영에 투입된 전체 재정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⁷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260억 4,700만원 중 258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021	26,021	26	-	-	26,047	25,854	73	120	38,48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연구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KICE 학습포럼 운영 필요

- KICE⁷²⁾ 학습포럼은 교육 현안 및 최신 연구 동향 관련 발표 등을 통해 차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중·장기 연구 방향 제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200만

71) 세부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72)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연구지원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2	12	-	-	-	12	12	-	-	1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5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 학습포럼의 목적을 ① 차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중·장기 연구방향 제시 역량 제고, ② 원내 구성원의 연구 및 업무 역량 향상, ③ 임직원 소통 활성화 및 사기 진작 등임.

〈2025년도 KICE 학습포럼 사업계획〉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교육 현안 및 최신 연구 동향 관련 발표 등을 통해 차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중·장기 연구 방향 제시 역량 제고
- 원내 구성원의 연구 및 업무 역량 향상 기회 제공
- 다양한 포럼 콘텐츠 제공에 따른 임직원 소통 활성화 및 사기 진작

■ 주요 사업내용

- 교육 관련 주제 발표 및 토론
- 외국의 교육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연구 역량 및 업무 역량 제고
- 기획 및 예산 관리 등에 관한 직무 교육 및 시사·교양 교육 운영

■ 주요 사업계획

- 전년도 만족도 조사 등 원내 직원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포럼 주제 설정
 - 경영혁신, 미래교육, 생활·건강, 인문·사회 교양 등의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
되, 특히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추진
- 학습포럼 참여율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
- 합숙 일정이 집중되는 10월 이전에 모든 학습포럼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기관 행사 또는 업무일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일정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다양한 인문학 주제 및 생활 강좌를 통한 원내 직원의 교양 신장
- 전문적 주제를 통한 원내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기여
- 정보 공유 및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유대감 강화
- 차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중·장기 연구 방향 제시 등 연구 역량 제고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근 5개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총 28회 학습포럼을 실시하였고, 연구
연가자 등의 결과발표를 포함하여 교육정책, 교육평가, AI 기반 교육
혁신, 교육데이터 분석, 연구방법론 등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과 직접
연계된 프로그램 이외에 ‘지구멸망시나리오’, ‘우리원 직원 건강을 위
한 스트레칭’ 등 다수의 인문교양·건강관리·문화예술·재테크 등 일반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KICE 학습포럼 운영 실적〉

연도	회차	주제	강사	일시 및 장소
2021	1	2020년 연구연가 결과 발표회	2020년 KICE 연구연가자	3.24.(수) 09:30, 원내 회의실
	2	AI와 융합교육	남00 (고려대학교)	4.28.(수) 10:00, 원내 회의실
	3	지구멸망시나리오 - 소행성에 대한 위협	조00 (한국천문연구원)	6.23.(수) 10:00, 원내 회의실
	4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관련 대처 방안	이00 (동아S&C)	7.28.(수) 10:00, 원내 회의실
	5	우리원 직원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김00 (인하대학교)	8.25.(수) 10:00, 원내 회의실
	6	마술같은 미술-생각을 여는 미술 이야기	양00 (한국예술종합학교)	9.15.(수) 10:00, 원내 회의실
2022	1	2021년 연구연가 결과 발표회	2021년 KICE 연구연가자	3.30.(수) 09:30, 원내 회의실
	2	미래교육과 에듀테크	계00 (KERIS)	4.13.(수) 10:00, 원내 회의실
	3	인칭의 미학으로서 인문학	유00 (한양대학교)	6.29.(수) 10:00, 원내 회의실
	4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신00 (한국환경연구원)	7.20.(수) 10:00, 원내 회의실
	5	디지털 화폐 경제	홍00 (홍익대학교)	8.30.(화) 10:00, 원내 회의실
	6	플랫폼 경제 생태계와 교수학습 환경의 진화	조00 (이화여자대학교)	9.21.(수) 10:00, 원내 회의실
2023	1	Chat GPT로 바라본 High Touch High Tech	고00 (EBS)	3.23.(목) 10:00, 원내 회의실
	2	2022년 연구연가 및 국외연수 시행결과 보고 및 평가회	2022년 KICE 연구연가 및 국외연수자	3.28.(화) 09:30, 원내 회의실
	3	NDIS(NRC Data Information System)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노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5.(수) 10:00, 원내 회의실
	4	컴퓨터 적응형 학습의 동향과 혁신 방향	한00 (GMAC)	4.25.(화) 10:00, 원내 회의실
	5	과학이 가르쳐준 것 들-과학자의 대화법	이00 (전, 국립과천과학관)	7.18.(화) 10:00, 원내 회의실
	6	탄소 중립 시대, 전기차의 역할 및 소비자 인식	권00 (국민대학교)	8.30.(수) 10:00, 원내 회의실
2024	1	2023년 연구연가 및 국외연수 시행 결과 발표 및 평가회	2023년 KICE 연구연가자 및 국외연수자	3.27.(수) 10:00, 원내 회의실
	2	AI × 인간지능의 시대	김00 (경희대학교)	5.29.(수) 10:00, 원내 회의실

연도	회차	주제	강사	일시 및 장소
	3	ESG 이해와 경영	박00 (성남문화재단)	7.31.(수) 10:00, 원내회의실
	4	AI 디지털교과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안00 (경인교육대학교)	9.25.(수) 10:00, 원내 회의실
	5	인공지능과 연구윤리	이00 (대학연구윤리협의회)	10.02.(수) 10:00, 원내 회의실
2025	1	2024년도 연구연가 및 국외연수 결과 보고	2024년 KICE 연구연가자 및 국외연수자	3.19.(수) 09:30, 원내 회의실
	2	모던의 탄생: 오르세 미술관 컬렉션을 통해 만나는 19세기 프랑스	박00 (아주대학교)	4.23.(수) 10:00, 원내 회의실
	3	항생제, 역사와 미래	고00 (성균관대학교)	7.2.(수) 10:00, 원내 회의실
	4	연금과 자산을 키우는 투자습관의 힘	이00 (연금비타민Lab)	8.20.(수) 10:00, 원내 회의실
	5	귀족 시대의 노스텔지어: 귀족적 이상과 사회적 차별화의 욕망	임00 (선문대학교)	10.1.(수) 10:00, 원내 회의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2025년에는 전체 5회 중 연구 관련 프로그램이 연구연가 결과보고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4회는 미술사·항생제 역사·재테크·귀족문화 등 연구기관의 핵심 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주제로 운영되었음.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⁷³⁾에 따르면 연구지원 사업은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7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운용지침」

□ 연구사업 정의

□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습포럼은 연구지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학습포럼의 주제가 연구사업 전반의 수행 지원 또는 연구역량 향상과 일정 수준 연계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동 학습포럼이 인문교양·문화·재테크 등 일반 소양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될 경우, 해당 예산은 연구지원사업비로 편성하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향후 학습포럼 운영 시 교육정책, 교육평가, AI 기반 교육혁신, 교육데이터 분석, 연구방법론 등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과 직접 연계된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평가하는 등 사업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u>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u>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10. 한국노동연구원⁷⁴⁾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고용·노동·사회정책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63억 6,300만원 중 157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노동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노동연구원	16,244	16,244	119	-	-	16,363	15,786	198	379	21,01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4) 세부사업: 한국노동연구원(1543-301)

2) 검토의견: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등

(1)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 7,900만원 중 자체연구개발 및 기관발전사업에 7,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67	-	12	-	79	76	3	-	15
자체연구개발	-	-	-	-	32	29	3	-	-
연구지원인프라	-	-	-	-	-	-	-	-	15
교육훈련	-	-	-	-	-	-	-	-	-
기관발전	-	-	-	-	47	47	-	-	-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	-	-	-	-	-	-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 출연연구기관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⁷⁵⁾에 따라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또는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에 우선 적립 후 남은 결

7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잉여금의 50%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⁷⁶⁾에 따르면,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교육훈련·기관발전 및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제5항은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적립금 사용계획에는 연례적·경상적 경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이 연구개발과 기관 발전을 위한 전략적·일시적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은 2025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적립금 7,900만원 중 4,700만원(59.5%)을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으로 집행하였음.

76)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적립금의 사용)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자체연구사업
2. 연구지원·인프라사업
3. 교육훈련사업
4. 기관발전사업
5.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② 연구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적립금 사용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사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사용계획 변경시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사업소요 중 정부출연금 매칭사업 및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④ 사용계획 수립 시에는 제1항제1호의 자체연구사업 비중을 당해 연도 적립금 총 사용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연례적 경상적 경비를 포함할 수 없다.

〈2025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자체연구	AI기반 제조업 혁신과 고용	32	29	91.1
기관발전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47	47	100.0
합 계		79	76	96.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원아 증가로 기관부담금이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기관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동 부담금 부족분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⁷⁷⁾.

□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0조⁷⁸⁾에

5) 한국노동연구원 2025회계연도 지출부에 따르면, 5월~10월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 4,7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하였고, 1월~4월, 11월~12월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 5,100만원을 인력관련경비(복리후생비)로 집행하였음.

7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운영비로서, 원아 수에 따라 금액의 증감은 있을 수 있으나 기관 운영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함.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기관부담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명, %)

연도	당초 경상운영비 중 편성액	집행액	부족분	연평균 원아 수	비고
2022	40,800	64,996	△ 24,196	11	부족분은 경상비 로 집행
2023	40,800	58,002	△ 17,202	10	
2024	48,000	68,444	△ 20,444	12	
2025	48,000	98,366	△ 50,366	18	부족분 중 4,700만원은 연구개발적립금으로, 336만원은 경상비로 집행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개발적립금은 정부출연금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자체연구사업, 연구인프라 구축 및 기관 발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기관의 연례적·경상적 운영비를 충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적립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이번 사례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었다는 절차적 적정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사회 의결만으로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적립금 사용은 관리규정이 예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과 같이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는 기관의 일반 운영예산에서 편성·집행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사업, 연구인프라 구축 및 기관발전사업 등 관리규정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적립금을 연례적·경상적 경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제5항의 ‘연례적 경상적 경비’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심사 시 경상경비 편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사업 간 예산 혼용 집행 개선 필요

□ 한국노동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연령대별 임금 격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실증 분석 등을 위해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3,6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본연구사업 중 ‘연령대별 임금격차연구’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연령대별 임금 격차연구	36	36	-	-	-	36	34	2	-	-
- 공공요금	0.7	0.7	-	-	-	0.7	0.7	0.0	-	-
- 수용비	2.8	2.8	-	1.7	-	4.5	4.4	0.1	-	-
- 연구기자재및임차료	-	-	-	7.9	-	7.9	7.6	0.3	-	-
- 여비	9.7	9.7	-	△7.5	-	2.2	1.7	0.5	-	-
- 연구정보활동비	2.8	2.8	-	3.5	-	6.3	6.0	0.3	-	-
- 전문가활용비	7.8	7.8	-	△1.5	-	6.3	5.8	0.5	-	-
- 회의비	2.7	2.7	-	2.5	-	5.2	4.9	0.3	-	-
- 외부용역비및부담금	9.5	9.5	-	△6.5	-	3.0	3.0	0.0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인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한국재정학회와 ‘연령대별 임금격차의 거시모형 분석’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당초 해당 연구과제의 예산만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연구사업인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의 예산을 함께 분담하여 집행하였음.

〈 ‘연령대별 임금격차의 거시모형 분석’ 위탁비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과제명	집행액	위탁 계약명	계약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기본연구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	3,000	연령대별 임금 격차의 거시모형 분석	한국재정 학회	2025. 6. 27. ~ 2025. 11. 15.	9,900
일반연구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	6,9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편,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⁷⁹⁾은 연구사업

79)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연구사업>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을 기본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및 일반연구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22조⁸⁰⁾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업별 예산의 독립성을 전제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위탁연구가 두 연구과제와 모두 관련성이 있어 비용을 분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에서는 위탁연구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위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보고서의 한 개 장을 직접 집필하는 등 주요 분석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활용하였고,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노동시장 이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 ☐ 일반사업이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계획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 후 5년간 의무유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 직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은 동일항목의 사업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고유사업은 각각 동일 항목(기본연구→기본연구 / 연구지원 → 연구지원)으로 이월한다.
 - 일반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은 동일사업으로 이월하고, 종료사업의 집행잔액은 연구개발적립금으로 편성한다.
 -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80)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22조(실행연구계획서 변경) ① 연구기관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사업 과제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연구대상,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 연구주제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과 연구과제명을 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2>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변경 사유발생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와 기준은 <별표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운영한다.
-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없이 고의로 사업계획 변경 및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행과 계속고용 관련 후속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위탁연구의 활용 내용을 보면, 연구성과가 직접 반영된 것은 기본연구사업인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인 반면, 일반연구사업에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고려하면, 일반연구사업에서 계약금액의 약 70%(690만원)를 부담한 것이 각 사업별 연구목적이나 허용범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의 예산 편성 당시 사업계획에는 ‘임금격차 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 파트 연구’를 위하여 외부용역비 950만원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사업계획 변경⁸¹⁾을 통해 실제 집행은 300만 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금액 690만원은 일반연구사업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예산 과목	변경 전 (2024. 12.)	변경 후 (2025. 4.)
합 계	36,000	36,000
공공요금	660	660
수용비	2,802	4,502

81)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접 수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통계프로그램 등을 구입(연구기자재 및 임차료)하고 위탁용역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2025. 4. 29.)을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함.

예산 과목	변경 전 (2024. 12.)	변경 후 (2025. 4.)
연구기자재및임차료	-	7,900
여비	9,778	2,178
연구정보활동비	2,760	6,260
전문가활용비	7,800	6,300
회의비	2,700	5,200
외부용역비및부담금	9,500	3,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또한 동 연구기관은 연구내용 간 연계성을 고려하였더라도 각 사업의 예산과 활용 범위에 맞게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에는 위탁연구 추진 단계부터 사업별 연구목적과 활용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분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별 활용내용과 집행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향후 동일한 위탁연구결과를 여러 연구과제가 공동 활용하기 위해 각 사업의 예산을 분담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 연구목적, 활용범위 및 비용분담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⁸²⁾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40억 3,800만원 중 239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786	23,786	252	-	-	24,038	23,968	70	-	29,57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일반 일간지 구독료를 개별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관행 개선 필요

- 2025회계연도 기본연구사업 및 일반연구사업의 연구정보활동비에서 일반 일간지 구독료 총 389만원을 집행하였음.

82) 세부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1546-301)

〈2025회계연도 연구정보활동비 일간지 구독료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정보 활동비 예산액	일간지 구독료 집행액	비고
기본연구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 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 교 연구	1,170	920	문 화 일 보 , 조선일보
기본연구	의료기관 사이버보안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426	680	코 리 아 헤 린 드, 한겨레 신문
일반연구	부모급여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 시간지원 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1,106	600	서 울 경 제 , 중앙데일리, 코리아중앙 데일리
일반연구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 의 집행 및 비용분담구조에 미치는 영향	1,000	850	중앙일보
일반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형평 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900	840	경 향 신 문 , 매일경제
합 계		5,602	3,8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⁸³⁾에 따르면 연구정보
활동비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 학술정보 DB 사용료,

83)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7) 연구정보활동비

(가) 정의 :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연수,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

(나) 세부지침

- 연구정보활동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은 여비에 편성한다.
- 특근매식비는 실제 각 부서별 업무량, 직원수, 특근일수 등을 감안하여 계획과 실적에 근거하여 편성한다.
 - 연구사업 및 연구지원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식대 등을 집행한다.
-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2시간 이상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

연구 관련 도서 및 문헌 구입 등 연구 수행에 직접 필요한 정보활동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위 연구과제들은 사회보장제도, 복지재정, 인구구조 변화, 의료
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로서, 주된 연구방법은 통계자료 분석, 행
정자료 및 미시자료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제도 비교분석 등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연구정보활동비에서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
문, 한겨레,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일반 일간지 구독료를 집행한 것은
해당 연구 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 정립, 국민계정
자료 분석, 국가별 미시자료 분석 및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보고서상 일반 신문기사의 수집·분석 또는 언론보도 분석
을 연구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구독료를 연구정보활동비에
서 집행한 것은 연구 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구분	내용
연구정보활동경비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연구자료구입비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학술정보 DB 사용료 등 자료 구입비
특근매식비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 또한, 여러 연구과제에서 각각 서로 다른 일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연구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이라기보다는 기관 구성원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신문 구독 비용을 연구사업비에서 분산하여 집행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정보활동비는 개별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정보수집 비용으로 한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공통으로 이용되는 일반 일간지 구독료는 기관 운영경비⁸⁴⁾ 등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정보활동비가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학술자료·통계자료 등의 정보수집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84)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3절 경상운영비

IV. 기타운영비

(1) 수용비

(가) 정의 : 일반적 사업 운영 또는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나) 세부지침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준 편성한다.
- **기관운영과 직접 관련된 수용비(행정사무비, 소모품비 등)를 편성한다.**
-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단가, 조달청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비적 성격의 비목은 산출단가의 현실화 등을 반영한 예산 절감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방지해야 한다.
- 매 회계연도 인쇄비용 등에 대한 미지급금을 설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 과도한 미정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분	내용
소모품등 구입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인쇄 및 출판비	예산서 등 인쇄발간비, 홍보물 제작비, 팜플렛 제작비, 복사비, 슬라이드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전문학술지 구독료
기타 수용비	공고료, 신문잡지 광고료, <u>신문구독료</u> , 주차료, 일반화물 운송비, 감사패 및 기념패 등 제작비 등

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기관 공용으로 활용되는 일반 일간지 구독료를 개별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행정연구원⁸⁵⁾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행정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48억 6,000만원 중 139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1,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행정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행정연구원	14,292	14,292	568	-	-	14,860	13,969	572	319	16,649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 검토의견: 챗봇 서비스 성과관리 강화 필요

- 한국행정연구원의 “인공지능기반 지식관리 웹플랫폼 구축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웹플랫폼 (www.kipa.re.kr)의 국·영문을 웹 반응형 UI/UX로 개편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제공을 위한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에서 이월된 예산 5,168만원 중 4,949만원을 집행하였음⁸⁶⁾.

85) 세부사업: 한국행정연구원(1552-301)

〈인공지능기반 지식관리 웹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액〉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예산액	102,200	-	102,200
집행액	50,520	49,490	100,01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 중 챗봇 서비스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AI 서비스로, 2025년 6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후 8월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 중임.
- 서비스 도입 이후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월별 이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챗봇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챗봇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별도의 통계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지표 산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월별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질문 건수〉

(단위: 명, 건)

년	월	이용자수(세션)	질문건수	질문/세션
2025	08	180	577	3.21
	09	131	441	3.37

86) 2024년 12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 4,949만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함.
- 계약기간 2024. 12. 9. ~ 2025. 5. 8. / 총 계약금액 9,898만원

년	월	이용자수(세션)	질문건수	질문/세션
	10	96	219	2.28
	11	94	159	1.69
	12	215	4,717	21.94
계		716	6,113	32.49
2026	01	89	146	1.64
	02	45	222	4.93
	03	30	41	1.37
	04	26	42	1.62
	05	23	35	1.52
계		213	486	11.0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은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이용 로그 분석을 통해 챗봇 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홍보 강화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 챗봇 서비스는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이용 패턴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능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답변의 정확성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챗봇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⁸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40억 4,400만원 중 136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8,0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13,688	13,688	356	-	-	14,044	13,664	-	380	14,276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수시연구과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수시연구사업비’는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연구원 기본연구사업비의 일부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임.⁸⁸⁾

87) 세부사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553-301)

-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8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62	62	36	-	-	98	53	46	-	57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5년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률은 53.6%로, 총 6개 과제 모두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 중 일부 과제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연구과제별 집행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88)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구조(「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23)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2025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배정 예산	집행 금액	집행 비율
1.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2024. 10. 4. ~ 2025. 4. 3.	36,407	25,555	70.2%
2.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2025. 5. 2. ~ 2025. 10. 31.	10,000	7,294	72.9%
3.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25. 6. 1. ~ 2025. 11. 30.	10,000	7,917	79.2%
4.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동향과 사범공조 강화 방안 모색	2025. 7. 15. ~ 2025. 12. 15.	10,000	3,862	38.6%
5.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25. 8. 1. ~ 2025. 12. 31.	10,000	7,640	76.4%
6.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2025. 12. 10. ~ 2026. 4. 10.	22,000	452	2.1%
합계(6건)		98,407	52,720	53.6%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에 대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관련 부처의 연구 수요가 주로 부처의 정책연구비로 요청되는 수탁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부처의 수시연구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하반기에 개발·착수되어 일부 과제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었다고 설명함.
- 다만, 수시연구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응하고 정책 연구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부처의 연구수요뿐만 아니라 정책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한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3년간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률도 2023년 81.7%, 2024년 66.7%, 2025년 53.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시연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수시연구사업 내역〉

(단위: 천원, %)

연도	예산액	예산집행 내역			
		연구과제명	배정 예산	집행 금액	집행 비율
총합	374,170	-	374,003	258,786	69.2
2023	149,276	소 계(12건)	149,109	121,788	81.7
		1. 첨단의료기술 임상연구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 디지털 치료를 중심으로	11,809	10,954	92.8
		2.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	9,400	9,091	96.7
		3.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정책 연구	16,700	16,598	99.4
		4. 형사정책 분야의 국정과제 기여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적용 방안 연구	19,100	18,401	96.3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14,400	13,980	97.1
		6.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16,800	16,409	97.7
		7.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11,000	10,738	97.6
		8.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8,900	8,774	98.6
		9.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14,400	14,192	98.6
		10. (이연 23.10.01 ~ 24.01.31)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10,800	1,132	10.5
		11. (이연 23.11.01 ~ 24.04.30) 영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출생 및 양육·보호	10,800	1,520	14.1

연도	예산액	예산집행 내역			
		연구과제명	배정 예산	집행 금액	집행 비율
		12. (이연 23.12.30 ~ 24.03.30) 디지털 성범죄 대응 거버넌스 연구	5,000	-	0.0
2024	126,487	소 계(10건)	126,487	84,311	66.7
		1.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9,668	7,657	79.2
		2. 영아의 출생 및 양육·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9,280	8,008	86.3
		3.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8,000	7,514	93.9
		4. 생성형 언어모델을 활용한 형사 법무분야 성과확산 방안 연구	10,000	9,814	98.1
		5. 수사 목적 폴리그래프 검사의 대상자 적합성 판단 기준 개선 방안	10,000	9,732	97.3
		6. 디지털 유산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10,000	9,810	98.1
		7. 해양형사·법무 분야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쟁점 연구	10,000	9,809	98.1
		8. 의료사고와 법적 책임의 귀속: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중심으로	10,000	9,981	99.8
		9.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방안 연구	10,000	8,855	88.6
		10. (이연 24.10.04 ~ 25.04.03) 형사 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39,539	3,132	7.9
2025	98,407	소 계(6건)	98,407	52,720	53.6
		1.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36,407	25,555	70.2
		2.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수 립에 관한 연구	10,000	7,294	72.9
		3.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10,000	7,917	79.2
		4.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동향과 사범공조 강화 방안 모색	10,000	3,862	38.6
		5.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0,000	7,640	76.4
		6. (이연 25.12.10 ~ 26.04.10)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 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22,000	452	2.1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따라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관련 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수시연구과제를 조기에 선정·착수하는 한편, 연구 기간 및 진도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시연구과제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